

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535호 2014. 7. 1.(화)

선	기관의 장
람	

【조 례】

제923호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924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9
제925호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13
제926호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21
제927호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38
제928호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50
제929호	공주시 근로자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53
제930호	공주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서비스 현장 운영 조례	59
제931호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65
제932호	공주시 도시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83
제933호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147
제934호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177

【규 칙】

제465호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83
제466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87

【훈 령】

제237호	공주시 정원관리 기관별 담당배치 규정 일부개정규정	205
제238호	공주시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폐지규정	207

【예 규】

【고 시】

제2014-86호	도로명 주소 부여 고시	208
제2014-87호	도로명 주소 변경 고시	210
제2014-88호	도로명 주소 폐지 고시	212
제2014-89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214
제2014-93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215
제2014-94호	의당복합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216
제2014-95호	유구문화예술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승인 고시	228
제2014-96호	소랭이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행계획(2회) 고시	230

【공 고】

제2014-885호	공주시 주민 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32
제2014-886호	공주시 포상 조례 시행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66
제2014-892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84
제2014-893호	공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89
제2014-911호	도시계획시설사업(체육시설 : 계룡산골프장, 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293

회 람							
--------	--	--	--	--	--	--	--

발행 공주시 (편집 시정담당관 ☎ 840-2051)

《 시 보 발 행 안 내 》

본 「시보」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 및 공주시보 발행규정에 의거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정 및 개·폐사항, 인사, 공고, 고시, 의회의 집회, 개회, 휴회 및 회기의 연장, 의사내용 등을 게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매월(1일, 15일) 2회 또는 수시 발행되오며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배부는 시산하 행정기관 및 이·통장님에게 배부됩니다.
이·통장님께서서는 본 「시보」에 게재된 내용을 이웃 등에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별도 편철 하시어 1년 동안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의회 제1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4. 6. 25)
에서 의결된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
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시 덕 인

2014년 7월 1일

공주시 조례 제923호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시장” 을 “공주시장(이하 “시장” 이라한다)”
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범위 안” 을 각각 “범위” 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3월전” 을 “3개월 전” 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규정에” 를 “규정에도” 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25인” 을 “25명” 으로, “3인” 을 “3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둔 자로서” 를 “둔 사람으로서” 로, “의하여” 를 “따라서” 로, “선정된 자” 를 “선정된 사람” 으로, “자를” 을 “사람을” 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이·통장” 을 “이장·통장” 으로, “추천하는 자” 를 “추천하는 사람”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각계 각층이” 를 “다양한 분야에서” 로, “한계층” 을 “한분야”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아닌 자” 를 “아닌 사람”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종사하는 자” 를 “종사하는 사람” 로, “높은 자” 를 “높은 사람” 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1월” 을 “1개월” 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1인” 을 “1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읍면동장” 을 “읍·면·동장” 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1” 을 “각호의 어느 하나” 로, “있는” 을 “있을” 로, “제4호 내지 제5호” 를 “제4호부터 제5호까지”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6월” 을 “6개월”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 을 “따라” 로, “잔임기간” 을 “남은 기간” 으로 한다.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범위안” 을 “범위” 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자치센터 활성화와 다양한 계층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작품전시회 개최
2. 우수 자치센터 견학 및 전국 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3. 전국 및 도 단위 동아리 경연대회 참가
4. 자치위원 교육 및 워크숍 개최 또는 전국 및 도 단위 행사 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u>시장</u> 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u>공주시장</u> (이하 “시장”이라 한다)-----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수당)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u>범위</u> 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① ----- ----- <u>범위</u> -----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u>범위</u>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 <u>범위</u> -----
제14조(보고) ① 읍면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u>3월전</u> 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 ① ----- ----- <u>3개월 전</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기능) ① (생략)	제16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u>규정</u> 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② ----- <u>규정도</u> -----

③ (생 략)

제17조(구성 등) ① 위원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② 읍·면·동장은 당해 읍·면·동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지를 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당해 읍면동의 이·통장 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 (생 략)

③ 읍면동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 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구성 등) ① -----

25명 ----- 3
명 -----
-----.

② -----

둔 사람으로서-----
따라서 ----- 선정된 사
람 -----

-사람을 -----
-----.

1. ----- 이장·통장

-----추천하는 사람

2. (현행과 같음)

③ -----

-----다양한 분야에
서 -----
-----한분야-----

초과 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⑤ 고문은 읍·면·동장이 위촉하되, 당해 읍·면·동의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⑥ 읍면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 연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하여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생략)

제19조(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

④ -----

아닌 사람 -----.

⑤ -----

종사하는 사람-----
----- 높은 사람-----
-----.

⑥ -----

-----1개월-----

-----.

⑦ (현행과 같음)

제19조(간사) ① -----
-----1명-----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읍면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해촉) ① 읍·면·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생 략)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 5. (생 략)

②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 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3조(실비보상 등)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

② 읍·면·동장-----

-----.

제20조(해촉) ① -----
-----각호의
어느 하나-----있을-----

-----제4호부터 제5호까지-----

-----.

1. (현행과 같음)

2. ----- 6개
월 -----

3. ~ 5. (현행과 같음)

② ----- 따라 -----

-----남은 기간-----
-----.

제23조(실비보상 등) ① -----

-----.
-----범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

② 시장은 자치센터 활성화와 다양한 계층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작품전시회 개최
2. 우수 자치센터 견학 및 전국 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3. 전국 및 도 단위 동아리 경연대회 참가
4. 자치위원 교육 및 워크숍 개최 또는 전국 및 도 단위 행사 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주시의회 제1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4. 6. 25)
에서 의결된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
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시 덕 인

2014년 7월 1일

공주시 조례 제924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997명”을 “99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980명”을 “981명”으로 한다.

별표 5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제25조 관련)

직 급 별 \ 기 관 별	총 계	본 청	의 사 회 사 무 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998	-				
정 무 직 계	1	1				
시 장	1	1				
일 반 직 계	962	-				
4 급	6	4	1	1		
5 급	51	25	2	5	3	16
6 급 이 하 계	905	-				
연 구 직 계	5	-				
연 구 관						
연 구 사	5	-				
지 도 직 계	30	-				
지 도 관	3			3		
지 도 사	27	-				

[별표 6]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 (제25조제2항 관련)

관 리 기관별	소속부서	구 분		정원	운용시한	비 고
		직종	직급			
본청	성장전략사업단	일반직	4급	1	2014년 12월 31일까지	단장
	기 획 담 당 관	일반직	6급	1	2015년 6월 30일까지	규제 개혁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 라 한다)의 총수는 <u>997명</u> 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u>980명</u> 2. (생략)	제23조(정원의 총수) ----- ----- ----- <u>998명</u> ----- -----. 1. ----- <u>981명</u> 2. (현행과 같음)

공주시의회 제1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4. 6. 25)
에서 의결된 공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
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시 덕 인

2014년 7월 1일

공주시 조례 제925호

공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3조 관련)

☐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분 야 별	일련 번호	건 명	근거법령
일반행정	1	주민등록법 제24조, 제30조, 제37조의 사항을 제외한 주민등록업무(다만, 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초본에 관한 사항은 읍·면 신청분에 한정함)	주민등록법
사회복지	1	각종 복지관련 증명서 발급 (읍·면 신청분에 한정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
	2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사항 조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8조제3항
	3	매장·화장 및 개장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4	기초연금 수급 신청	기초노령연금법 제6조,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분 야 별	일련 번호	건 명	근거법령
민 원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 및 증명	자동차관리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
	2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	자동차관리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3	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착	자동차관리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
	4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발급 신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2조
	5	이륜자동차신고사항 변경 신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01조
	6	이륜자동차대장 비치.관리	자동차관리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7	개별(공동)주택 가격확인서 발급(다만, 읍·면 신청분에 한정함)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제 16조
재 정	1	시세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송달 및 징수 독촉	지방세기본법 제28조, 제33 조, 제53조, 제55조, 제61조
	2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다만, 읍·면 신청분에 한정함)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9 조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발급지침
	3	지방세 납세증명 (다만, 읍·면 신청분에 한정함)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1 조, 제4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4	시세 징수 지원	지방세기본법 제61조
	5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조사 협 조	지방세법 제120조 공주시시세기본조례 제5조
	6	시유재산 실태조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

분 야 별	일련 번호	건 명	근거법령
도시주택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읍·면 신청분에 한정함)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2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 조
	3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수리	건축법 제36조
	4	빈집조사	농어촌정비법 제64조
	5	광고물 등의 표시·신고수리 (다만, 현수막, 벽보, 전단 은 관할 구역에 게시하는 경 우에한정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 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 7조
	6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서 접수 및 현지 확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7	농지에서의 불법개발행위 조사 및 시정명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56조
산업경제	1	농지전용신고	농지법 제35조
	2	입산신고수리	
	3	산불예방 및 진화	
	4	공주시 근로자 복지회관 위 탁 경영관리(유구읍장에 한정 함)	공주시 근로자 복지회관 설 치 조례 제5조
	5	지원금액 30,000천원 미만 의 농림수산물사업 사후관리	농림수산물사업실시규정 제37조
수 도	1	가구분할 적용신고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분 야 별	일련 번호	건 명	근거법령
건 설	1	보도 및 도로 파손지 조사	도로법 제23조
	2	보도 잡초 제거	도로법 제23조
청소관리	1	행정구역내 대청소 실시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33조
	2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홍보 지원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33조
	3	쓰레기봉투 무료제공 지원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33조
문 화	1	공주시유구문화의집 관리. 운영: 시설관리, 프로그램 운영, 사용허가 등 (유구읍장에 한정함)	공주시 유구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분 야 별	일련 번호	건 명	근거법령
일반행정	1	주민등록법 제24조, 제30조, 제37조의 사항을 제외한 주민등록업무(다만, 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초본에 관한 사항은 읍·면 신청분에 한정함)	주민등록법
사회복지	1	각종 복지관련 증명서 발급 (동 신청분에 한정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
	2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사항 조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8조제3항
	3	기초연금 수급 신청	기초노령연금법 제6조,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민 원	1	출생·사망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동에 신고한 경우에 한정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4조
	2	개별(공동)주택 가격확인서 발급 (다만, 동 신청분에 한정함)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6조

분 야 별	일련 번호	건 명	근거법령
재 정	1	시세 정기분 납세고지서 송달	지방세기본법 제28조, 제33조
	2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다만, 동 신청분에 한정함)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발급지침
	3	지방세 납세증명 (다만, 동 신청분에 한정함)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1조,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2조
	4	시세 징수 지원	지방세기본법 제61조
	5	시유재산 실태조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
도시주택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읍·면 신청분에 한정함)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2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 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3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수리	건축법 제36조
산업경제	1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중학동 제외)	농지법 제8조
	2	농지원부의 작성·비치	농지법 제49조
	3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의 발급	농지법 제50조
	4	자경증명 발급(중학동 제외)	농지법 제50조
	5	입산신고수리(중학동 제외)	
	6	산불예방 및 진화	
수 도	1	가구분할 적용신고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8조

분 야 별	일련 번호	건 명	근거법령
건 설	1	보도 및 도로 파손지 조사	도로법 제23조
	2	보도 잡초 제거	도로법 제23조
환경관리	1	공중화장실 관리(중학동 제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청소관리	1	행정구역내 대청소 실시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33조
	2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홍보 지원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33조
	3	쓰레기봉투 무료제공 지원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33조

공주시의회 제1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4. 6. 25)
에서 의결된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
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시 덕 인

2014년 7월 1일

공주시 조례 제926호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보통우편” 을 “일반우편” 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받고자 하는 때에는 기한이 만료되기 전” 을 “원할 때
에는 기한” 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제1항 단서” 를 “제1항의 단서” 로, “보통우편” 을

“일반우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11조에 따라 시장은 이장 및 통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 및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제4항 후단 중 “경우에는 사전에 이·통장에 대하여 고지서 송달에 관한 교육을” 을 “경우에는 이장 및 통장에게 고지서 송달 교육을 미리” 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보통우편 송달부)” 를 “(일반우편 송달부)” 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보통우편” 을 각각 “일반우편” 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공유물건으로서” 를 “공유물건이며” 로, “대하여” 를 “대해서” 로 한다.

제11조 중 “경우 해당 자에 대한” 을 “경우에는” 으로, “즉시 그 취소사실을” 을 “즉시 취소사실을 대상자에게” 로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정하는 가족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열람하도록” 을 “정한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열람하게” 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공탁 등)” 을 “(교부금전의 예탁)”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법 제72조에 따라 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 중 “예탁한 때에는 그 뜻” 을 “예탁 한 경우에는 내용” 으로, “그 통지서” 를 “통지서”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하여” 를 “대해서” 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 을 “안전행정부령” 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제13조” 를 “제12조” 로 한다.

제21조 중 “하는 자는” 을 “할 때에는” 으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요구여야” 를 “요구하여야”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80조 제1항제1호” 를 “법 제80조제1항제1호” 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납세자에 대하여” 를 “납세자에게” 로 한다.

제28조 중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 이내” 를 “압류 한 날부터 3개월

안” 으로, “3월이 경과하도록” 을 “3개월이 지나도” 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세무공무원은” 을 “세무공무원이” 로, “압류할 재산이 없는” 을 “압류 재산이 없을” 로 한다.

제29조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색은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만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집행함에 있어서” 를 “집행하면서” 로, “경우에는” 을 “경우,” 로,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를 “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및 서류와” 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제1항의 경우” 를 “제1항에 따른” 으로, “중 2인” 을 “2명” 으로, “1인” 을 “1명” 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본문 중 “밖에 재산 중에서” 를 “밖의 재산 중에” 로 한다.

제38조제5호 중 “채권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을 “채권액을 충당하고 남은 경우에는” 으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10일간” 을 “10일 동안” 으로 한다.

제40조제2호 중 “대하여” 를 “대해서” 로 한다.

제44조 중 “결정되면 동” 을 “결정되면” 으로, “채납액은” 을 “채납액을” 로, “따른” 을 “따라” 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기일” 을 “시세는 법정기일” 로,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보다는 시세가” 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보다” 로, 같은 조 제2항 중 “위하여” 를 “해서” 로, “이내” 를 “안” 으로 한다.

제47조 중 “법 제141조에 대” 를 “법 제141조에 관” 으로, “위하여” 를 “위해서” 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증빙자료의” 를 “증명자료”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16조 제3항” 을 “법 제116조제3항” 으로,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해서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고,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자로 하며,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제49조제4항 중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가부동수인” 을 “가부의 수가 같을” 로 하고, 같은 조 제2 항 중 “안전에 대한 결정 사항을 시장 에게” 를 “안전의 결과를 시장에게” 로 한다.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기중 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을 “임기중이라도 해촉 할” 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적용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수금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금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우편”이란 「우편법」에 따른 <u>보통우편</u> 및 등기우편(배달증명 우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 <u>일반우편</u> ----- ----- -----.
제7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납세자가 법 제26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u>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u>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7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 ----- <u>원할 때에는 기한</u> ----- ----- -----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생략) ② <u>제1항 단서</u> 에도 불구하고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은 <u>보통우편</u>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영 제11조에서 조례에 정하는 방법이란 시장이 이·통장에	제8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의 단서</u> ----- ----- ----- <u>일반우편</u> -----.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11조에 따라 시장은 <u>시장 및 통장에게 서류송달을 위</u>

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통장에게 서
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
전에 이·통장에 대하여 고지서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생 략)

제9조(보통우편 송달부) 보통우편
의 방법으로 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보통우편 송달부는 규칙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발송우체국의 우편물접수인을
날인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등) ① (생
략)

② 공유물건으로서 지분별로 납
세의무가 있는 시세에 대하여는
그 지분별로 납부해야 할 시세
를 각자의 명의로 된 고지서에
공유물건 납세의무자 명단을 첨
부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제11조(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 시장은 납세의무자가 체

임 및 위탁할 수 있다. -----

경우에는 이장 및 통장에게 고
지서 송달 교육을 미리-----
--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일반우편 송달부) 일반우편

--일반우편 -----
-----.

-----.

제10조(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등) ① (현행
과 같음)

② 공유물건이며-- -----
-----대해서-----

-----.

제11조(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 -----

납 시세를 납부하거나 다른 압류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하고 즉시 그 취소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3조(미납세 등의 열람) ① 미납세(체납세 포함)의 열람신청은 임차인이 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족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6조(공탁 등) ①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법 제72조에 따라 공탁하거나 또는 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다만, 시금고에 예탁할 경우 예탁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공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그 뜻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서에는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경우에는 -----

즉시 취소사실을 대상자에게 -.

제13조(미납세 등의 열람) ① --

-----.

-----정한 가족
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열람하게

-----.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법 제72조에 따라 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

② ----- 예탁한 경우
에는 내용-----
-----통지서-----
-----.

③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
용한다.

제18조(시세의 수납) ① 영 제61
조제2항제1호에서 행정자치부
령으로 정하는 지방공무원 특수
지 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 및 기
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
칙에서 규정하는 벽지지역·도
서지역·접적지역인 읍·면을
말한다.

② (생 략)

제19조(시세환급금의 충당 등) ①
(생 략)

②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시
세환급금을 충당하는 때의 충당
순서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제21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법
제80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납세담보의 요구) 시장은
법 제26조제2항 및 제82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요구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③ -----
대해서-----
-----.

제18조(시세의 수납) ① -----
-----안전행정부
령-----

-----.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시세환급금의 충당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2조-----.

제21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

----- 할 때에는 -----
-----.

제24조(납세담보의 요구) -----

-----요구하여야 -. -

아니한다.

1. 법 제80조 제1항제1호의 사
유로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를 하는 경우

2. 일정지역의 모든 납세자에
대하여 납기연장이나 징수유
예 등을 하는 경우

3. (생략)

②·③ (생략)

제28조(시세확정 전 보전압류)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
확정 전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
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납세의
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
며, 3월이 경과하도록 납세의무
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즉
시 해당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
다.

제29조(수색) ① 세무공무원은 체
납자의 재산을 수색하였으나 압
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수
색조서를 작성하고 체납자 또는
2인 이상의 참여자와 함께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생략)

-----.

1. 법 제80조제1항제1호-----

2. ----- 납세자에
게-----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시세확정 전 보전압류) -

-----압류 한
날부터 3개월 안-----

-----3개월이 지나도 -----

-----.

제29조(수색) ① 세무공무원이 -

-----.

② (현행과 같음)

③ 수색은 해 뜰 때부터 해 질때까지로 한정한다. 다만, 해가 지기전에 개시한 수색은 해가 진후에도 계속 할 수 있다.

④ (생략)

제30조(질문·검사권) 세무공무원
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
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
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여
그 소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 6. (생략)

제31조(참여자의 설정) ① (생략)

② 제1항의 경우 참여자가 없거나
참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시, 읍·면·동 공무원
중 2인 이상 또는 경찰공무원 1
인 이상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제36조(공매) ① 압류한 동산·부
동산·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
중에서 납세담보로 제공된 재산

③ 수색은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만 한다. -----

-----.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질문·검사권) -----
-----집행하면서-----

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및 서
류와-----

-----.

1. ~ 6. (현행과 같음)

제31조(참여자의 설정) ① (현행
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

2명-----
1명-----
-----.

제36조(공매) ① -----
----- 밖의 재
산 중에-----

과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재산 및 무체재산권은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공매하여야 한다. 다만, 금전은 제외한다.

② (생략)

제38조(배분방법) 압류재산의 매각금액, 압류한 금전 및 제3채무자로부터 급부를 받은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은 그 매수대금의 미지금액을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채납처분비·가산금·시세 및 채권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채납자에게 교부한다.

6. ~ 8. (생략)

제39조(채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①·② (생략)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채납처분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일

-----.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배분방법) -----

-----.

1. ~ 4. (현행과 같음)

5. -----

--채권액을 충당하고 남은 경
우에는-----
-----.

6. ~ 8. (현행과 같음)

제39조(채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간신문·공보에 게재하거나 시
게시판에 10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제40조(회생절차개시 결정시의
업무처리) 세무공무원은 회생절
차 개시신청 및 결정이 있는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
다.

1. (생략)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
한 법률」 제58조제3항에 따
른 채납처분 중지기간중 시세
를 징수하여도 해당 법인의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
는 경우 법원에 대하여 채납
처분의 속행을 명하는 결정의
신청

3. (생략)

제44조(법원인가 결정시 징수유
예등) 세무공무원은 회생계획이
법원으로부터 인가 결정되면 동
회생계획에 따라 징수유예 등을
한 채납액은 법령 및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0일 동안 -----
--.

제40조(회생절차개시 결정시의
업무처리) -----

-----.

1. (현행과 같음)

2. -----

-----대해서 -----

3. (현행과 같음)

제44조(법원인가 결정시 징수유
예등) -----
-----결정되면-----

-----채납액을 -----
-----따라 -----
-----.

제45조(지방세 우선권의 확보) ①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정기일 이후에 등기·등록된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제2항 및 「상가건물임대차보
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
요건과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
일자 보다는 시세가 우선하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
에 유의하여 우선권이 확보되도
록 하여야 한다.

1. · 2. (생략)

② 납세자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시세의 법정기일 1년 이내에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인과 전세권·질권·저당권 설정계약이나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통정한 허위계약으로 추정되므로 즉시 법원에 해당행위의 취소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재산의 압류등을 하여야 한다.

제4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

141조에 대한 사항을 각각 심사 또는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전문가·청구인·참고인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법 제116조 제3항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회업무담당자로 하며,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50조(심사·의결) ① 위원장은

141조에 관-----

-----위해서

-----.

제49조(위원회의 운영) ① ----

----증빙자료-- -----

-----.

② 법 제116조제3항-----

-----.

③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해서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고, 간사

는 위원회 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자로 하

며, -----

-----.

④ -----

-----작성

하고 관리하여야-----.

⑤ (현행과 같음)

제50조(심사·의결) ① -----

표결권을 가지며, <u>가부동수인</u>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심사 또는 심의·의결한 <u>안건에 대한 결정 사항을 시장에게</u>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임기중이라도</u>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u>기타</u>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때	-----<u>가부의 수가 같을</u>----- -----. ② ----- -----<u>안건의 결과를 시장에게</u>----- ----- -----. 제51조(위원의 해촉) ----- ----- -----<u>임기 중</u>----- <u>이라도 해촉 할</u>-----. 1. ---- <u>또는 그 밖의</u> ----- ----- -----
---	--

공주시의회 제1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4. 6. 25)
에서 의결된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시 덕 인

2014년 7월 1일

공주시 조례 제927호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
추어”를 “해당하는 증명 서류를”로, “소재지를 관할하는”을 “소
재지 관할”로 한다.

제5조 중 “기장”을 “기재”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충청남도 도세 조례」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 앞에 절 번호 및 절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종업원분

제9조 앞의 “제4장 지방소득세” 를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 총액의 1천분의5로 한다.

제10조 앞의 “제2절 종업원분” 을 삭제한다.

제10조의 제목 “(세율)” 을 “(신고의무)”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 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 앞에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지방소득세

제11조의 제목 “(신고의무)”를 “(세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제2호가목 중 중 “법 제13조제3항”을 “법 제1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법 제13조제3항제1호”를 “법 제13조제5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가목 중 “법 제13조제3항제5호”를 “법 제13조제5항제5호”로 한다.

제16조 전단 중 “법 제115조제1항제3호”를 “법 제115조제1항제3호의”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충청남도 도세 조례」 제5조”를 “「충청남도 도세 조례」 제6조”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제외한다”로 하고, 제2항 후단 중 “「충청남도 도세 조례」 제5조”를 “「충청남도 도세 조례」 제6조”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장 에게”를 “시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충청남도 도세 조례」 제5조”를 “「충청남도 도세 조례」 제6조”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충청남도 도세 조례」 제5조”를 “「충청남도 도세 조례」 제6조”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20조 중 “일치하지 아니한”을 “다를”로, “등재하고”를 “기록하고”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를 “해당하는 증명 서류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비과세할” 을 “비과세 할” 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대하여” 를 “대해서” 로 한다.

제23조 중 “또한 같다” 를 “통지해야 한다” 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업원분의 적용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세의
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절 종업원분에 대해서는 법
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의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
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소득세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주민세 및 지방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 ----- ----- ----- <u>해당하는 증명 서류를</u> ----- ----- <u>소재지 관할</u>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조(장부 비치·보존 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제조 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u>기장</u> 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장부 비치·보존 의무) --- ----- ----- ----- <u>기재</u> ----- -----.
제8조(신고의무)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충청남도 도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신고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다만, 「충청남도 도세 조례」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u>

1. ~ 5. (생략)

<신설>

제4장 지방소득세

제9조(세율) 법 제89조에 따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2절 종업원분

제10조(세율)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5로 한다.

<신설>

<신설>

제11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1. ~ 5. (현행과 같음)

제3절 종업원분

<삭제>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 총액의 1천분의5로 한다.

<삭제>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 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 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4장 지방소득세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 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 신설 하였을 때 [개정 2013.7.15.]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신 설>

제12조(세율) 법 제111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생 략)
 2. 건축물
- 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골프

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세율) -----

-----.

1. (현행과 같음)
 2. 건축물
- 법 제13조제5항에-----

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 다. (생략)	----- ----- ----- -----
3. 주택 가.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생략)	3. 주택 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
4. 선박 가. 법 제1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나. (생략)	4. 선박 가. 법 제13조제5항제5호에 ----- -----
제16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7.15.]	제16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의 ----- ----- ----- ----- ----- -----. -----
제17조(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①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17조(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① ----- ----- ----- ----- ----- ----- -----

제18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 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도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15.]

제18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

시장에게 -----
----- 「충청남도 도
세 조례」 제6조 -----
----- 제외한다. -----

1. ~ 5. (생 략) 제19조(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도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u>그리</u> <u>하지</u> 아니하다. [개정 2013.7.15.]	1. ~ 5. (현행과 같음) 제19조(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 ----- ----- ----- ----- ----- ----- ----- 「충청남도 도세 조례」 제6조- ----- -----제외한 <u>다.</u>----- --
1. ~ 5. (생 략) 제20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가 사실과 <u>일치</u> <u>하지</u>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u>등</u> <u>재</u>하고, 그 뜻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	1. ~ 5. (현행과 같음) 제20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 ----- ----- ----- 다를----- ----- -----기록하 <u>고</u>----- -----. 제21조(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

항)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 7. (생략)

제22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 없이 해당 재산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 연월일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3조(납세관리인 지정) 시장은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자 및 납세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항) -----

----- 해당하는 증명 서류를-----

-----.

----- 비과세 할 -----.

1. ~ 7. (현행과 같음)

제22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

-- -----대해서-----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납세관리인 지정) -----

----- -- 통지해야 한다.

공주시의회 제1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4. 6. 25)
에서 의결된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시 덕 인

2014년 7월 1일

공주시 조례 제928호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주변지역”이란 공주보·백제보소수력발전소, 세종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이하 “주변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사업을 위해서 지원 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 설치) 공주시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공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특별회계 관리·운용) 지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다음의 각호와 같이 담당과를 정하여 계정을 구분하고 관리·운용한다.

1. 공주시 경제과는 세종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관리·운용한다.
2. 공주시 안전관리과는 공주보·백제보소수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관리·운용한다.

제5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7조(이월사용)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 제1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4. 6. 25)
에서 의결된 공주시 근로자 복지회관 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시 덕 인

2014년 7월 1일

공주시 조례 제929호

공주시 근로자 복지회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주시 근로자 복지회관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 근로자 복지회관 설치 조례”를 “공주시 근로자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공주시 근로자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근로자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해서 공주시

근로자 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공주시 근로자 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이 한다.

제3조(업무와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의 자기계발 등 교육 프로그램 제공
2.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및 확대 관련 정보 제공
3. 근로자의 여가활동 지원에 관한 시설 운영
4. 그 밖에 근로자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교양·문화 공간 제공

제4조(이용자의 범위) 복지관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소재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재외국민, 외국인 포함)와 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이용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복지관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감염병질환이 있는 사람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 단체에게 위탁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수탁자의 관리책임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 의무) ① 수탁자는 이용자 및 시민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운영 기간 중 해당 시설물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의 사전 허가 없이 변경, 훼손, 매매, 임대 등 시설물의 변경 및 사용권을 이전하는 모든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복지관 설치 목적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제6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을 경우

제8조(손해배상) 복지관 시설의 이용자 또는 수탁자가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변경하거나 파손시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 및 감독) ① 담당공무원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면 시설운영 관련 서류를 검사하고, 성실하게 지도 · 감독해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준용) 복지관의 관리 · 운영에 관해서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운영 위탁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복지관을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 수탁자는 다음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까지 책임과 의무는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별표]

복지관의 명칭과 위치

명 칭	위 치
공주시 유구근로자복지관	공주시 유구읍 중앙1길 143-30
공주시 검상근로자복지관	공주시 검상안길 156(검상동)

공주시의회 제1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4. 6. 25)
에서 의결된 공주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현장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시 덕 인

2014년 7월 1일

공주시 조례 제930호

공주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현장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서비스현장 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
에 따라 공주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현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규제 신고 고객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소통·신뢰의 민원행정
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주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이하 “헌장” 이라 한다)이라 함은 공주시(이하 “시” 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이하 “서비스” 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라 함은 기업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기업규제 신고고객 만족도” 라 함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시 공무원들이 기업규제 신고고객(이하 “고객” 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 결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시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법인·단체에도 준용할 수 있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신고사항에 대한 시정명확화의 원칙

제5조(현장의 내용 및 구성) ① 현장의 내용은 별표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현장 전문
2. 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시정 및 보상조치
4. 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5. 고객 의견제출 또는 신고센터
6. 고객 협조사항 등

② 그 밖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주시 행정서비스현장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현장 개정 및 절차) ① 현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현장 개정을 하여야 한다.

② 현장의 개정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현장 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공주시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3. 현장 공포 및 시행

제7조(현장의 실천) ① 시장은 현장을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현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③ 시장은 현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현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현장을 제정 및 개정한 경우에는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1. 시보 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4.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② 규제 신고고객이 현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 기업규제신고 담당부서장은 고객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현장을 게시해야 한다.

제9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① 시 모든 부서에서는 현장 실천에 대한 고객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접수할 수 있다.

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시장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다.

③ 시 모든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조사하고 현장에 따라 즉시 기업규제신고 담당부서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기업규제신고 담당부서장은 현장에 따라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그 내용을 반기별로 시 모든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① 시장은 현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에 관련한 이행실적을 매년 중소기업 옴부즈만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현장 이행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부서 및 공무원에게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우리 공주시 모든 공무원은 기업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질 높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주시와 고객사이의 소통 · 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기업고객에게 약속드립니다.

하나, 우리는 기업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정비·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기업규제개선, 애로제기 등에 관해서 의견을 제출한 고객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기업고객께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조사하여 신속히 개선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기업고객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만족도를 평가하여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기업규제, 제도, 정책을 수립, 이행하는 전 과정에서 기업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기업고객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공주시의회 제1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4. 6. 25)
에서 의결된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시 덕 인

2014년 7월 1일

공주시 조례 제931호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개정)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국내기업의 이전비 지원)” 을 “(지방투자기업의 투자
지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수도권이전기업, 타 시·도 이전기업, 지방 신·증설기업 (관내기업 포함), 국내복귀기업 및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시 관 할 구역에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정에 의한 본사·연구소·공장의”를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은 제1호와 같다”를 보조금 총액은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7조의3을 삭제한다.

제2조(「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관내”를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에 따라 공주시에 소재하고 있는”으로, “위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을 “위해서 공주시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을

설치하고,” 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로,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를 “제42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세공과금” 을 “각종 세금과 공과금”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후단 중 “이 경우” 를 “다만,” 으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자금을 조성·지원하기 위하여 공주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이하” 를 “기금을 조성·지원하기 위해서 공주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이하” 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주시(이하 “시” 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제2항 중 “시장” 을 “공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으로, “계상” 을 “반영” 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기금의 관리·운영등)” 을 “(기금의 관리·운용)” 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관리·운영한다” 를 “관리·운용한다” 로

하며, 같은 조 단서 중 “단,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의거” 를 “다만,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따라” 로, “이차보전등을” 을 “이차보전 등을” 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기금의 사용등)” 을 “(기금의 사용)” 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에 의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을 “기금 중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이하 “자금” 이라 한다)” 으로,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하여” 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중소기업지원계획의 창업자금에 해당하는 기업의 시설자금 이외의 자금

제7조의 제목 “(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자)” 를 “(자금의 지원대상)” 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의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의 융자지원” 을 “자금의 지원” 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중” 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서 중소기업의” 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기금의 차입) 시장은 발전기금의 운용상 필요할 때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 받은 액수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제2장의 제목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의 융자” 를 “기금의 융자” 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융자계획의 공고등)” 을 “(융자계획의 공고)” 로 하고, 같은 조 중 “의거” 를 “따라” 로, “이를 공고하여야” 를 “공고하여야” 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경영안정기금” 을 “자금”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융자신청절차, 제출서류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이 조례의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의한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서류 검토 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를 “따라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공주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로, “지원대상적격여부” 를 “지원대상 적격여부” 로 한다.

제12조 중 “융자기간 등” 을 “융자기간 등 융자조건의” 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융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한 기금융자대상자를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주시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융자심의위원회(이하” 를 “따른 기금융자대상자를 심의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3조제3항 중 “부시장” 을 “공주시 부시장” 으로, “호선한다” 를

“선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주시의회 시의원(기금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은 제외한다.)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13조제5항 중 “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제4항제9호에 의한 기타”를 “제4항제9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14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5조 중 “소속공무원”을 “공무원”으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자금지원자”를 “자금 지원자”로,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을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 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허위로 자금을 지원 받은 자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자

제17조제1항 중 “3월”을 “8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서”를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로, “시의회”를 “공주시의회”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위하여”를 “위해서”로, “시민국장, 기금출납원은 기업지원업무담당주사가된다”를 “기업지원업무 담당국장으로하고, 기금출납원은 기업지원업무 담당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서 도지사에게 위탁할 수도 있다.

제18조제2항 중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을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으로, “관하여는 공주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대해서는 「공주시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공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공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15일”을 “3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영안정자금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운용되고 있는 경영안정자금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본다.

공주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1. “기업유치”라 함은 공주시 (이하“시”라 한다)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의 본사나 연 구소 또는 공장을 시 관할구 역 안으로 유치하는 것을 말 한다.	<삭 제>
2. ~ 6. (생략)	1. ~ 5. (현행 제2호부터 제6 호까지와 같음)
제7조(국내기업의 이전비 지원)	제7조(지방투자기업의 투자지원)
① 시장은 시 관할구역 밖에 소 재하는 기업의 본사나 연구소 또는 공장을 시 관할구역 안으 로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지보조금·투자보조 금·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 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도권이전기업, 타 시·도 이전기업, 지방 신·증 설기업(관내기업 포함), 국내복 귀기업 및 개성공업지구 현지기 업이 시 관 할 구역에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 금, 투자보조금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 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② ----- -----

같다.

1.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적합한 본사·연구소·공장

2. 3. (생략)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사·연구소·공장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2항제1호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의한다.

2. 3. (생략)

4.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은 제1호와 같다.

5.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보조금 총액은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의3(행정중심복합도시 편입기업에 대한 이전비 지원) 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 3. (현행과 같음)

- ③ ----- 따른-----

-----.

1. -----산업통상자원
부장관-----

-----.

2. 3. (현행과 같음)

4. -----
---- 보조금 총액은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삭 제>

<삭 제>

<u>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건설되는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편입되어 이전해야 하는 기업 중 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입지보조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②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관내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공주시에서 소재하고 있는 ----- ----- 위해서 공주시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을 설치하고,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이라 함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0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3.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이라 함은 상품홍보비, 시험연구비, 원·부자재구입비, 노무 및 인건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기계 및 시설 개·보수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4. “전업율”이라 함은 승인을 얻고자 하는 업종의 최근 결산연도 매출액이 총매출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자가소비가 있는 경우에는 자가소비분의 생산액을 매출액에 합산할 수 있다.

- .
1.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2. -----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 제42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3. -----

----- 각종 세금과 공과금-----

-----.
4. -----

----- 다만,-----
--- 경우에는 자가소비분---

-----.

제3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지
원하기 위하여 공주시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신 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운영 수익금

3. 기타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
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
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영등) 기금
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단,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의거
동기금 관련 용자 중소기업체에
대한 이차보전등을 위해 도지사
에게 관리·운용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사용등) 기금에 의
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은 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
----- 기금을 조성
· 지원하기 위해서 공주시중소
기업경영안정기금(이하 -----
-----.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

-----.

1. 공주시(이하“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
다)----- 반
영-----.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
----- 관리·운용한다. 다
만,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따
라 -----
----- 이차보전 등을 ---
-----.

제6조(기금의 사용) 기금 중에 중
소기업경영안정자금(이하“자

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생략)

2.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의 시설자금 외
의 자금

제7조(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
자) 제6조의 중소기업경영안정
자금의 융자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
기업중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공주시 안에 소재한
자

2. (생략)

제8조(자금의 차입등) 시장은 기
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기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도입 및 금융기
관에 대한 지급보증을 할 수 있
다.

제2장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의
융자

제9조(융자계획의 공고등) 시장은

금”이라 한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
-.

1. (현행과 같음)

2. 지방중소기업지원계획의 창
업자금에 해당하는 기업의 시
설자금 이외의 자금

제7조(자금의 지원대상) 자금의
지원-----

-----.

1.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서 중소기업의 -----

2. (현행과 같음)

제8조(기금의 차입) 시장은 발전
기금의 운용상 필요할 때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 받
은 액수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으
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제2장 기금의 융자

제9조(융자계획의 공고) -----

매년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에 의거 용자실시 이전에 용자총액, 용자대상사업, 용자한도, 용자조건, 용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용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용자 신청) ① 경영안정기금을 용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시장에게 용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용자신청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용자대상자의 선정) ① 시장은 제10조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서류 검토 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적격여부 및 용자금액을 결정한다.

② (생략)

제12조(용자조건 등) 자금의 지원한도액, 용자금리, 용자기간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용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 따라 -----

공고하여야-----

제10조(용자 신청) ① 자금-----

-----.

② 용자신청절차, 제출서류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이 조례의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11조(용자대상자의 선정) ① ----- 따라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공주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 ----- 지원대상 적격여부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용자조건 등) ----- 용자기간 등 용자조건의 -----.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① 시장은 제11조에 의한
기금융자대상자를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주시중소기업경
영안정자금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
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다.

1. ~ 4. (생략)

5. 공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중

6. ~ 8. (생략)

9.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여 위촉한자

⑤ 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제외
한 제4항제9호에 의한 기타 위
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및 운영) ① -----
따른 기금융자대상자를 심의하
도록 하기 위해서 공주시 중소
기업 경영안정기금운용심의위
원회(이하 -----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③ ----- 공주시 부시장--

선출한다.

④ ----- 사람
이 -----

1. ~ 4. (현행과 같음)

5. 공주시의회 시의원(기금 관
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은
제외한다.)

6. ~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⑤ 제4항제9호에 해당하는---

-----.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 3. (생략)
4.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수당과 여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지원자에 대하여 지원자금의 운용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허위에 의하여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환수등 필

⑥ ----- 운영에 -----

-.

제14조(위원회의 기능) -----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제15조(수당과 여비) 공무원-----
-----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

제16조(사후관리) ① -----
----- 자금
지원자-----
----- 관
련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 할-----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허위로 자금을 지원 받은 자

요한 조치를할 수 있다.

제17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서와 결산보고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 및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시민국장, 기금출납원은 기업지원업무담당주사가된다. 단, 제5조에 의거 이를 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공주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자

제17조(결산 및 보고) ① -----

----- 80일 -----
-----.

② -----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 계획서-----
-----공주시의회-----
-----.

제18조(기금관리공무원) ① ---
----- 위해서 -

----- 기업지원업무 담당국장으로하고, 기금출납원은 기업지원업무 담당으로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서 도지사에게 위탁할 수도 있다.

② --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 대해서
는 「공주시재무회계규칙」--

-----.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

공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대비

현행	개정안
제6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 ④ (생략) 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u>15일</u> 이내로 한다. ⑥·⑦ (생략)	제6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u>30일</u> ----- -----. ⑥·⑦ (현행과 같음)

공주시의회 제1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4. 6. 25)
에서 의결된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
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시 덕 인

2014년 7월 1일

공주시 조례 제932호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외하고는” 을 “제외하고” 로 한다.

제11조제3호 중 “로써” 를 “로서” 로, “5백제 곱미터” 를 “5백제곱
미터” 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3조제4항” 을 “영 제43조제4항제8
호”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제16조제3호가목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이 경우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어 해당 대지에 절토나 성토행위가 없이 건축물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상태로 조성되어 있는 대지를 의미한다.”로 하며,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57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을 하지 아니하도록 조건을 붙인 건축물이 건축된 대지(건축물이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다른 용도의 건축물(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 다목부터 마목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대지로 보지 아니한다.

제16조제3호다목에 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도시개발사업·택지개발사업 등 관계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
- 2) 지목이 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인 대지
- 3) 관계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를 포함) 다만, 축사 등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은 제외

제16조제6호나목 중 “물 건”을 “물건”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구성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을 “구성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인접의”를 “인접한”으로, “설치하거나”를 “설치하여 수질검사를 받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있거나”를 “있거나,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금지하는 조건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구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하여는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 또는 강화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대지면적이 7천제곱미터 미만(자연환경보전지역은 5천제곱미터 미만) 또는 10호 미만의 주택”을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이고, 개발면적이 7천제곱미터 미만이며(자연환경보전지역은 5천제곱미터 미만), 10호 미만의 주택(공동주택은 10세대 미만)”으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물”을 “건축물·공작물”로, “제한은”을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건축법에 따르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수 있”을 “수 없”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수 있”을 “수 없”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수 있”을 “수 없”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수 있”을 “수 없”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수 있”을 “수 없”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수

있”을 “수 없”으로 하고, 같은 조 제19호 중 “수 있”을 “수 없”으로 하며, 같은 조 제23호 중 “수 있”을 “수 없”으로 한다.

제31조제14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제32조제14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제33조제6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을 “격리병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교 시설보호지구”를 “학교시설보호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정신병원·요양소·격리 병원”을 “정신병원·요양병원·격리병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제40조제13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제42조제12호 및 제13호 중 “60퍼센트”를 각각 “7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 중 “이하”를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제4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경우에
는”을 “경우 :”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
조제8호라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 부터”를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로 하며,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다만 산업단지의 효율 증진을 위한 업무시설·정보처리시설·전시시
설·유통시설 등의 용지 등 지원시설용지는 제외한다.

제4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고 고시한 계획관리
지역 : 50퍼센트 이하

제4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1.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
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 90퍼센트이하
2.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 해당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
트 이하

3.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에 한한다)의 건축물 : 40퍼센트이하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건축물 : 50퍼센트이하

5.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 :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5조제5항”을 “영 제85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경우에는”을 “경우 :”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농공단지 중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있는 농공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중 도시계획

구역 외의 지역에 있는 농공단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고 고시한 계획관리
지역 : 125퍼센트 이하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5조제6항”을 “영 제85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57조”를 “제4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57조 각호에 따른”을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정한”으로 한다.

제49조의 제목 “(빈터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를 “(공공시설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영 제85조제7항”을 “영 제85조제8항”으로, “정비구역 또는”을 “정비구역과”로,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빈터를”을 “공원·광장·도로·하천·녹지 등의 공공시설을”로, “다음 계산식”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적용”을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times$ [1 + 1.5 $\times$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폐지되는 공공시설의 면적 - 입주민 등을 위한 기반시설면적) $\div$ 공공시설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 $\leq$ 조례상 용적률로 한다.
2.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은 도로 및 녹지 등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면적을 말하며, 입주민 등을 위한 기반시설면적은 용적률

완화 적용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중 진입도로 및 가·감속차로 설치 등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기반시설 부담면적(산정식 = 기반시설 제공후 대지면적 $\times$ 5%)으로하고, 폐지되는 공공시설의 면적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폐지되는 공공시설(공원·녹지, 도로 등) 면적을 말한다.

제49조제2항 후단 중 “관한” 을 “관한 위원회” 로 한다.

제51조 중 “최고고도 지구” 를 “최고고도지구” 로, “따로 정한다” 를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로 한다.

제53조제2호 중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로 한다.

제57조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에 회부된 심의사항의 심의 횟수는 2회까지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년 이내에 동일 안건으로 위원회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59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동위원회

가. 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시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추천을 받아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제59조제1항제1호의 제1분과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위원이 되고 건축위원회 위원

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9조제5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제59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제59조제5항 후단 중 “심의사항”을 “심의사항(제1항제2호가목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6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수당·여비”를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57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 3부터 별표 2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부터 별표 12까지 별표 15, 별표 21은 2014. 7. 15.이후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
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
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하
다.)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에는 해당 개발 행위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
이 개정 규정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별표 3]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제1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및 고등학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4]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2호 및 제30조제2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5]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3호 및 제30조제3호관련)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전문대학, 대학 및 대학교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

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바.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6]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4호 및 제30조제4관련)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8층 이하(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건축물을 건축할 때 지구단위계획 등 별도의 계획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최고 층수는 24층 이하로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로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전문대학, 대학 및 대학교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

소 및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4. 별표 5 제14호의 공장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7]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5호 및 제30조제5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전문대학, 대학 및 대학교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 하는 것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14. 별표 5 제14호의 공장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8]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6호 및 제30조제6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 시설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건축물을 제외한다)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5 제14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도축장·도계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연순환 관련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9]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7호 및 제30조제7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건축물을 제외한다)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건축물을 제외한다)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저장소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연순환 관련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0]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8호 및 제30조제8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건축물을 제외한다)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건축물을 제외한다)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5 제14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연순환 관련 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11]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9호 및 제30조제9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건축물을 제외한다)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건축물을 제외한다)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5 제14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연순환 관련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12]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0호 및 제30조제10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건축물을 제외한다)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건축물을 제외한다)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은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연순환 관련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3]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1호 및 제30조제11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차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동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연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4]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2호 및 제30조제12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을 제외한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연순환 관련 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5]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3호 및 제30조제13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
시술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
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목부터 라
목에 해당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16]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4호 및 제30조제14호관련)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7]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5호 및 제30조제15호관련)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제1차 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

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같은 호 마목 및 자목은 제외한다)
-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8]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6호 및 제30조제16호관련)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 다.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7 제8호 가목부터 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우리시에서 우리시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같은 호 마목 및 자목은 제외한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연순환 관련 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2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2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9]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7호 및 대통령령 제17816호 영 부칙 제13조제1항 및 제30조제17호관련)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같은 호 마목 및 자목은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마목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0]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8호 및 제30조제18호관련)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

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같은 호 마목 및 자목은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연순환 관련 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1]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9호 및 제30조제19호관련)

1.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별표25에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별표25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단란주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별표25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우리시에서 우리시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은 제외한다)
 - 가. 별표 20 제1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만, 인쇄·출판시설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않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은 제외한다.
 - 다.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 라.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마.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의 사업장 중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 다만, 시장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같은 호 마목 및 자목만 해당한다)

[별표 22]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20호 및 제30조제20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비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3]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21호 및 제30조제21호관련)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고, 정화시설 등 수질 오염방지 시설을 갖춘 것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 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바목,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 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 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4]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22호 및 제30조제22호관련)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
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
장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
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
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
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20 제9호가목부터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25]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숙박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규칙 제12조 별표 2 및 제30조제23호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휴게음식점은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거나 반경 25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자연마늘이 형성된 지역과 주용도 시설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편의(부대)시설은 제외하며, 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단지의 조성계획(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에 의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관광농원 또는 관광휴양단지에 건축하는 경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지구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지구 등은 제외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지방하천(유구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5.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주

- 1)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 2) "유하거리"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 3)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 4) 1호의 산정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을 말하며, 같은 호 나목, 다목 및 제2호 공동주택은 호수와 상관없이 1호로 산정하고, 폐가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의 공가는 대상호수에서 제외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9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	-----
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	-----
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및 「공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	-----
용료 징수 조례」에서 정한 바	-----
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한	---제외하고--- -----
다.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제11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제11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	-----
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다음 각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
우로써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	-----
근·철골콘크리트조가 아닌 건	-----
축물로 한다.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3. -----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	-----
은 호 차목, 타목 및 파목은	-----
제외한다)로써 3층 이하이고,	-----로써 ---

연면적의 합계가 5백제 곱미
터 이하인 것으로 분양을 목
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4. (생 략)

제12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
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
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
정할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
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주택재건축사업구
역 부지

2. ~ 8. (생 략)

제16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나. (생 략)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
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
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

-----5백제 곱미

터- -----

4. (현행과 같음)

제12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
획구역의 지정대상) ----- 영
제43조제4항 제8호-----

-----.

<삭 제>

1. ~ 7. (현행 제2호부터 제8
호까지와 같음)

제16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

나. (현행과 같음)

다.-----

의 형질변경(흙깎기 및 흙
쌓기는 제외한다) <단서 신
설>

<신 설>

<신 설>

----- 제외한다)

이 경우 조성이 완료된 기
존 대지란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서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어 해
당 대지에 절토나 성토행위
가 없이 건축물 등을 건축
할 수 있는 상태로 조성되
어 있는 대지를 의미한다.
다만, 영 제57조제2항에 따
라 용도변경을 하지 아니하
도록 조건을 붙인 건축물이
건축된 대지(건축물이 멸실
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다
른 용도의 건축물(영 제57
조제1항제1의2호 다목부터
마목에 따라 건축할 수 있
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
존 대지로 보지 아니한다.

- 1) 도시개발사업·택지개
발사업 등 관계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
- 2) 지목이 대·공장용지·
학교용지·주차장·주유

<신 설>

라. (생 략)

4. 5. (생 략)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생 략)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시장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소용지·창고용지인 대지

3) 관계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를 포함) 다만, 축사 등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은 제외

라. (현행과 같음)

4. 5. (현행과 같음)

6. -----

가. (현행과 같음)

나. -----

-- 물건-----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

-----.

1. 입목의 축적 및 구성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적용한다.

2. 3. (생략)

② (생략)

제20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제2호에 따라 도로 및 상수도·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관습적으로) 도로로 이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사실상의 도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청지역에 인접의 기존시설
과 이어지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

1. ----- 구성은 「산
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2.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
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

-----. <후단 삭제>

1. ----- 인접한 -----

로 하는 경우(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은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공하수도가 설치되지 않는 지역은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써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략)

<신설>

-설치하여 수질검사를 받거나

-----.

2. -----

-----있거나,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금지하는 조건 또는 --

3. (현행과 같음)

4.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구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하여는 지역

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
여 법령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 또는
강화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 7. (현행과 같음)

제23조(토지의 분할제한면적 등)

다

-----다
만,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
른다.

1. · 2. (현행과 같음)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
의 심의) ① (현행과 같음)

②

1. ~ 7. (생략)

제23조(토지의 분할제한면적 등)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신설>

1. · 2. (생략)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
의 심의) ① (생략)

② 영 제57조제1항1의2호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써 그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대지면적이 7천제곱미터 미만(자연환경보전지역은 5천제곱미터 미만) 또는 10호 미만의 주택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 6. (생략)

제30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영 별표 3부터 별표 25까지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6.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이고, 개발면적이 7천제곱미터 미만이며(자연환경보전지역은 5천제곱미터 미만), 10호 미만의 주택(공동주택은 10세대 미만)-----.

1. ~ 6. (현행과 같음)

제30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

-----건축물·공작물-----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건축법에 따르며 -.

1. ~ 5. (현행과 같음)

6. -----수
없-----
--.

7. -----
수 없-----
-----.

8. -----
수 없-----

다.	-----.
9.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9. ----- 수 없----- -----.
1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0. ----- - 수 없----- -----.
11. · 12. (생략)	11. · 12. (현행과 같음)
13.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3. ----- 수 없----- -----.
14. ~ 18. (생략)	14. ~ 18. (현행과 같음)
19.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19. ----- 수 없----- -----.
20. ~ 22. (생략)	20. ~ 22. (현행과 같음)
23.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 별표 25와 같다.	23. ----- ----- 수 없----- -----.
제31조(자연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1조(자연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 ----- -----.
1. ~ 13. (생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4. -----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 시설

15. (생 략)

제32조(수변경관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 13. (생 략)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 시설

15. (생 략)

제33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른 시가지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 5. (생 략)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 시설

7. (생 략)

제34조(미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3조에 따라 미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

-----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현행과 같음)

제32조(수변경관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

-----.

1. ~ 13. (현행과 같음)

14. -----
-----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현행과 같음)

제33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

1. ~ 5. (현행과 같음)

6. -----
----- 자원순환 관련 시설

7. (현행과 같음)

제34조(미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

물을 건축할 수 없다.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9호의 의료시설 중 <u>정신병원</u> 및 <u>격리병원</u>	2. ----- <u>격리</u> <u>병원</u>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u>분뇨 및 쓰레기처리 시설</u>	10. ----- <u>자원순환</u> <u>관련</u> <u>시설</u>
11. · 12. (생 략)	11. · 12.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9조(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u>학교 시설보호지구</u> 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9조(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 <u>학교시설보호지구</u>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9호의 의료시설 중 <u>정신병원</u> · <u>요양소</u> · <u>격리 병원</u> 및 <u>장례</u> <u>식장</u>	4. ----- <u>정신</u> <u>병원</u> · <u>요양병원</u> · <u>격리병원</u> - -----
5. ~ 11. (생 략)	5. ~ 11. (현행과 같음)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u>분뇨 및 쓰레기처리 시설</u>	12. ----- <u>자원순환</u> <u>관련</u> <u>시설</u>
13. · 14. (생 략)	13. · 14. (현행과 같음)

제40조(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 12. (생략)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 시설

14. · 15. (생략)

제42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1. (생략)

12. 일반공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4. · 15. (생략)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 유원지의 경우에는 30퍼센트 이하)

17. · 18. (생략)

제40조(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물) -----

-----.

1. ~ 12. (현행과 같음)

13. -----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 15. (현행과 같음)

제42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

-----.

1. ~ 11. (현행과 같음)

12. -----70퍼센트 --
--

13. -----70퍼센트 --
--

14. · 15. (현행과 같음)

16. -----

----- 이하-----

17. · 18. (현행과 같음)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의 경우로써 2003년 1월 1일 전에 이미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 설치의 충분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정하여 건폐율 50퍼센트 이하)

20.·21. (생략)

제43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에 따른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40퍼센트 이하(공원마을지구의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5.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21. (현행과 같음)

제43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① -----

-----.

1.·2. (현행과 같음)

3. -----

----- 경우 :-- --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5. -----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

제8호가목 부터 다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
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후단 신설>

6. 영 제84조제5항제4호에 따
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
축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
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
다.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호에 따른 전통사찰나. 「문화
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
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 항에 따른 등록문화재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
호에 따른 한옥
<신 설>

조제8호가목부터- -----

다만 산업단지의 효율 증진을
위한 업무시설·정보처리시설
· 전시시설·유통시설 등의
용지 등 지원시설용지는 제외
한다.

6. 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성장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고시한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
하

②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다

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
다.

1.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
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 9
0퍼센트이하

2. 녹지지역 · 관리지역 · 농림
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
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
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 해
당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
퍼센트 이하

3.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
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
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
에 허용된 건폐율에 한한다)
의 건축물 : 40퍼센트이하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

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건축물 : 50퍼센트이하

5.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 :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6호에 따른 한옥

제47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에 따른 용도 지구·용도구역

제47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8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농공단지 중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신설>

제48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 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의 건축물로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

-----.

1. (현행과 같음)
2. -----

----- 경우 :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중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있는 농공단지--
--

4. 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고 고시한 계획관리지역 : 125퍼센트 이하

제48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 제7항-----

되는 경우에는 그 용적률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빈터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빈터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 : 제57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
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57조 각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49조(빈터의 설치·구성 후 제
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illegible]

1.

--제46조 제1항

2. -----

-----제46조 제1항 각 호
에 따라 정한 -----

제49조(공공시설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

제51조(최고고도 지구 해제지역
내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 최
고고도 지구 해제지역에 공동주
택 및 상업용 고층건물의 신축
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충
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4. (생 략)

제57조(회의운영) ①·② (생
략)

③ 위원회에 회부된 심의사항의
심의 횟수는 2회까지로 한다.
다만,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
위 허가의 1회 심의는 30일 이
내로 한다.

④ (생 략)

제59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114

제51조(최고고도 지구 해제지역
내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 최
고고도 지구- -----

----- 시행규칙
으로 따로 정한다.

제53조(기능) -----
-----.

1. (현행과 같음)
2.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3. 4. (현행과 같음)

제57조(회의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에 회부된 심의사항의
심의 횟수는 2회까지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
년 이내에 동일 안건으로 위원
회에 재상정할 수 없다. -----

-----.

④ (현행과 같음)

제59조(분과위원회) ① -----

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신설>

② ~ ④ (생략)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

-----.

1. 2. (현행과 같음)

3. 공동위원회

가. 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공동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위원회와 시 건축위원회
의 위원 중 추천을 받아 공
동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제59
조제1항제1호의 제1분과위
원은 공동위원회의 위원이
되고 건축위원회 위원이 3
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부
시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
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
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지

<u>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제64조(위원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u><신 설></u>	<u>구단위계획에 관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제59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u> <u>----- 심의사항(제1항제2호가목은 제외한다)-.</u> 제64조(위원 수당) ① ----- <u>-----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u> <u>-----</u> ② 제57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

공주시의회 제1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4. 6. 25)
에서 의결된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시 덕 인

2014년 7월 1일

공주시 조례 제933호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4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심의한다”를 “심의(심의사항
변경을 포함한다)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
며, 같은 항 제2호 중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을 “근린생활시
설”로, “바닥면적(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

적의”로, “건축물”을 “건축물(20세대 또는 20실 미만인 것과 주차장 부분을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미관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신금택지개발지구, 공공주택지구 및 역세권개발지구만 해당하며, 경관세부계획을 수립한 구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 건축에 관한 사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다음”을 “심의를 받아야 하거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이라도 다음”으로, “하나의 경미한 변경사항은”을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건축물 및 한옥 형태의 건축물
2. 충청남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를 받은 사항
3. 다른 위원회(설계경기심사·공공디자인심의·고도보존육성심의 등 위원회를 말한다)에서 심의를 받은 사항(제1항제3호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4. 건축물의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건축물의 기본 형태나 외관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상반되지 아니할 것
 - 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

지 아니하는 범위일 것

5.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건축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시장의 요청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기회의: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후(공휴일은 다음날로 하고, 심의 안건이 없으면 생략함)

2. 수시회의: 시장의 요청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제4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건축위원회”를 “위원회”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시장은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7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를 “의결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의2를 삭제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종결일부터 30일이 지나 신청한 경우에만 심의의견 및 결과를 공개(개인정보를 제외한다)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9조제7항의”를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와 위원회가 요구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2항”을 “제1항”

으로, “심의결과를 30일 이내에” 를 “3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위원회에서 조건을 붙여 의결한 건축물은 건축허가신청서에 그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본문 중 “제12조” 를 “제9조제6항” 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 를 “제외한다” 로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량구조로 된 임시창고 및 간이작업장(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주된 건축물과 같은 형태의 용도나 구조는 제외한다)
2. 마을(공동주택 단지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방법·환경개선 등을 위한 주민 공동이용시설
3. 야외흡연실, 공장 등에 설치하는 공해방지 목적의 기계·설비 보호 시설

제20조제2항제4호 중 “차양·비가림 등 전천후시설(기존 재래시장” 을 “차양·비가림시설(전통시장” 으로, “도시미관 등” 을 “도시미관” 으로, “화재 등의 재난 발생시 소화나 구호” 를 “소방서장이 소화·구조” 로, “없다고 소방서장이” 를 “없다고” 로, “해당된다)” 를 “해당한다)” 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화원” 을 “꽃집” 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경량구조로 된 농지나 산림 경영 목적의 집하장 및 관리시설. 다만,

주거 목적은 제외한다.

제2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25조”를
“법 제25조 및 영 제19조제5항”으로 한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건축물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은 법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공용건축물을 포함한다)로 하며, 업무의 범위 및 업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가설건축물 포함)·대수선 및 용도변경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영 제2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된 건축사

- ②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신청을 받는 대로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 총청남도 건축사회장(이하 “건축사회장”이라 한다)에게 업무대행자를 선정해주도록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 ③ 건축사회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 선정을 의뢰받는 대로 영 제20조제1항과 검사 및 확인업무에 적합한 건축사를 선정하여 시장에

게 알려야 하고, 업무대행자에게 검사 및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해주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업무대행자는 선정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용
승인을 위한 검사를 한 후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시장에게 제출(건축행정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하
다)하여야 하며, 건축주에게 검사비용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⑦ 건축사회장이 업무대행자의 선정기준과 검사방법 등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업무대행자의 선정과
관련된 절차는 팩스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3조의 제목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의 실시)” 를 “(정기점검 및 수
시점검)” 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0제곱미터” 를 “300제곱미터”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5퍼센트” 를 “10퍼센트” 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5퍼센트” 를 “3퍼센
트” 로 한다.

2. 연면적 합계 1천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
면적의 7퍼센트 이상

제25조제2항제3호 중 “운전학원, 물류단지” 를 “운전학원” 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구역
의 건축물

제2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장 및 물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식수 등 조경을 완화할 수 있다.

1. 공장(연면적 합계 2천 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2. 물류시설(연면적 합계 2천 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하며,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대지면적(주차장은 제외한다)의 5퍼센트 이상

제26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창고시설(농축수산업용)”을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용)”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을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지이용 상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거나 도로를 확보하는 등 불가피한 분할은 제외한다.

제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은 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서로간의 대지
2. 한옥마을 등 한옥 보존·진흥을 위해서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

제32조의 제목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를 “(건축물의 높이 완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너비(폭 15미터까지만 해당한다)에 포함”을 “너비에 포함(폭 15미터까지만 해당하며 공지가 2개소 이상으로 합계가 15미터를 넘는 부분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높이 3미터 이하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높이 3미터 이하로서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 건축물
2. 인접 대지 소유주와 합의하여 건축하는 2층 이하로서 높이 8미터 이하인 건축물

제34조의 제목 “(이행강제금의 산정)”을 “(이행강제금 산정·부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법 제80조제1항 및 영 별표 15의 제13호에 따른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차등 산정하고 위반동기·용도·형태 등에 따라 감경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산정 및 감경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공사 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 ②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영

별표 15의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③ 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은 연1회씩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3회까지만 반복하여 부과한다.

④ 이행강제금을 자진납부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를 준용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축수산업용”을 “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용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미터”를 “8미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6미터”를 “8미터”로 한다.

별표 3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를 받아 건축 중인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별표 3]

대지의 공지 기준(제30조 관련)

대상 건축물	건축선에서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인접대지경계선 에서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1.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공동주택 제외)	-	·2미터 (한옥의 경우 1미터)이상
2.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이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 는 공장 제외)	·준 공업지역: 1.5미터 이상 ·그 밖에 지역: 3미터 이상	·준 공업지역: 1미터 이상 ·그 밖에 지역: 3미터 이상
3.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이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 는 창고 제외)	·준 공업지역: 1.5미터 이상 ·그 밖에 지역: 3미터 이상	-
4.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종합병원에 한함),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 제외),	·3미터 이상	·상업지역 제외 ·3미터 이상 (5층 이하 2미터 이상)
5. 공동주택		·상업지역 제외
가. 아파트	·4미터 이상	·6미터 이상
나. 연립주택	·2미터 이상	·3미터 이상 (3층 이하 2미터 이상)
다.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3미터 이상 (3층 이하 2미터 이상, 2층 이하 1 미터 이상)
6. 그 밖에 건축물		
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2미터 이상	·2미터 이상
나.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동물과 관련된 시설에 한 함),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식장	·3미터 이상	·2미터 이상

[별표 4]

이행강제금 산정 및 감경기준(제34조제1항 관련)

1. 산정기준

위반행위 종류	해당 법조문	산정금액
가. 허가위반 건축	법 제11조, 제16조	위반면적에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30을 곱한 금액 이하
나. 신고위반 건축	법 제14조, 제16조	위반면적에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20을 곱한 금액 이하
다. 가설건축물 및 주거용 건축물(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및 영 제115조의2제1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20조	가목 및 나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라. 영 별표 15 제13호 건축물	영 별표 15 제13호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2. 감경기준

대상건축물	감경금액	적용방법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 해당자 건축물	산정된 금액의 2분의 1이하	· 위반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면 감경하지 아니함. · 감경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거듭 감경하지 아니함.
나. 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용 건축물(작물재배사, 축사, 창고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 건축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시설(화장실, 계단, 노약자 편의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라. 기존건축물의 재축 그 밖에 위반동기, 형태, 구조 등을 감안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계획 심의(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건 축 주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대 지 조 건	위 치					
	지 역		지 구			
	면 적		전면도로			
건 축 계 획	용 도		구 조			
	건축면적	m ² (%)	연 면 적	m ² (%)		
	층수 및 높이		공사종류			
	외벽재료		지붕형태			
설 계 자	사무소명 성 명		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설계 참가자 (구조, 설비)	사무소명 성 명		등록번호 (면허번호)			
심 의 신 청 내 용	☐ 다중이용 건축물 ☐ 미관지구 등 건축물 ☐ 분양목적 건축물 ☐ 그 밖에 사항()					
「건축법」 제4조제5항 및 「공주시 건축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축계획 심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구 비 서 류	1. 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 전자문서 도서 포함) 2. 건축위원회 운영 및 심의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도서 비고: 부수는 위원수에 따라 조정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의 완화) ① (생 략)	제3조(적용의 완화)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완화신청을 받 으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 야 한다. 다만, 심의결과 보완 등으로 심의되면 <u>그러하지 아니</u> <u>하다.</u>	② ----- ----- ----- ----- ----- ----. ----- <u>예외로 한다.</u>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 례) 법 제6조, 영 제6조의2제2 항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의 제정 · 개정이나 영 제6 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령 등에 맞지 아니하는 기존의 건축물과 대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 라 건축(재축, 증축 및 개축만 해당된다)과 용도변경을 허가하 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제4조(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 례) ----- ----- ----- ----- ----- ----- -----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u>7.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 선하는 경우</u>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에 준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건축위원회(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경기심사위원회 및 공공디자인위원회를 포함한다) 심의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및 업무시설로서 바닥면적(주차장을 제외한다)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축에 관한 사항

3. 미관지구, 신시가지역(택지개발지구와 국민임대주택단지를 포함한다) 및 중동지구일반상업지역(산성동·금성동을 포함한다)의 건축물 건축에 관한 사항. 다만,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사항은 제외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

-----심의(심의사항 변경을 포함한다)한다.

<단서 삭제>

1. (현행과 같음)

2. -----
-----근린생활시설-----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건축물
(20세대 또는 20실 미만인 것과 주차장 부분을 제외한다)

3. 미관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신금택지개발지구, 공공주택지구 및 역세권개발지구만 해당하며, 경관세부계획을 수립한 구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 건축에 관한 사항

4.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한다. 다만,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이나 심의조건을 변경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계획의 기본 형태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규모를 축소하거나 바닥면적 합계의 10분의 1이하 범위에서 1개 층 이하의 증축(대지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거나 동일 건축물로서 층수가 다르면 최고층수를 적용한다)

2. 건축물의 출입이나 이용 동선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외부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건축물의 위치변경

3. 법 제14조나 제16조에 따른 신고대상인 변경

4. 건축물의 구조 변경과 주요

4. (현행과 같음)

② ----심의를 받아야 하거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이라도 다음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 <단서 삭제>

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건축물 및 한옥 형태의 건축물

2. 충청남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를 받은 사항

3. 다른 위원회(설계경기심사·공공디자인심의·고도보존육성심의 등 위원회를 말한다)에서 심의를 받은 사항(제1항 제3호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4. 건축물의 규모 등을 변경하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
에서의 평면이나 용도의 변경

5. 건축물 외관의 기본 형태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나 노
대 등 경미한 외관의 변경

제7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
피) ①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
척(除斥)된다.

1. ~ 5. (생략)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
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건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건축위원회는 의결
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

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
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건축물의 기본 형태나 외
관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위
원회의 심의결과에 상반되
지 아니할 것

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
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일 것

5.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
기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관
한 사항

제7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
피) ① 위원회의-----

-----.

1. ~ 5. (현행과 같음)

② -----

-----위원회-----
-----위원회-----
-----.

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생략)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신설>

② · ③ (생략)

④ 회의에 부친 심의 사항의 심의 횟수는 2회까지로 한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 건축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회의) ① -----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 -----

-----.

1. 정기회의: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후(공휴일은 다음날로 하고, 심의안건이 없으면 생략함)
2. 수시회의: 시장의 요청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단서 삭제>

⑤ 위원회 -----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시장은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7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⑥ (생략)

⑦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위원회에 간략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 및 그 밖에 건축위원회가 요구하는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건축위원회에서 조건을 붙여 서 의결한 사항은 건축허가 신청 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심의 생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의를 생략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2. 영 제5조5제1항제4호에 따

의결한다.

⑥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라 충청남도 건축위원회 심의
를 거친 건축물

제11조(회의록) ①·② (생략)

③ 위원장은 심의종결일부터 30일이 지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위원별 의견, 심의결과와 사유를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심의신청 등) ① 제6조1항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미리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계획 심의신청서에 제9조제7항의 도서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건축계획 심의신청을 받으면 심의결과를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건축계획이 관계법령의 중요 규정에 맞지 아니하여 건축허가 등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 심의 전에 반려할 수 있다.

<신설>

제11조(회의록)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심의종결일부터 30일이 지나 신청한 경우에만 심의의견 및 결과를 공개(개인정보를 제외한다)한다.

제12조(심의신청 등) ① -----

-----간략설계도서(배치도
· 평면도 · 입면도 · 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와 위원회가 요구하는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30일 이내에 심
의하고 그 결과를 -----
----- . <단서 삭제>

④ 위원회에서 조건을 붙여 의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심의사항을 심사한 위원과 제12조에 따라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줄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은 그렇지 아니하다.

제20조(가설건축물) ① (생략)

② 영 제15조제5항제1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경량구조의 창고, 차고 또는 작업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공동주택 단지에서 재활용품 관리 등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물로서 연면적이 100제곱

결한 건축물은 건축허가신청서에 그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

제9조제6항-----

----. -----제외한다.

제20조(가설건축물)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경량구조로 된 임시창고 및 간이작업장(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주된 건축물과 같은 형태의 용도나 구조는 제외한다)

2. 마을(공동주택 단지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방법·환경 개선 등을 위한 주민 공동이

미터 이하인 것

3. 소규모 폐기물 처리시설, 공
해 배출시설, 기계 등의 보호
시설로서 연면적이 200제곱
미터 이하인 것

4. 차양·비가림 등 전천후시설
(기존 재래시장에 설치하는
것은 도시미관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화재 등의 재난 발
생시 소화나 구호 활동에 지
장이 없다고 소방서장이 동
의하는 것만 해당된다)

5. 비닐하우스나 고정식 온실의
화초·분재 등 화원

6. 경량구조의 마을공동이용시
설, 방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③ (생 략)

제21조(사용승인) 법 제22조제2
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감리자가 제출한
사용승인조서 및 검사조서를 검
토한 후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용시설

3. 야외흡연실, 공장 등에 설치
하는 공해방지 목적의 기계·
설비 보호시설

4. 차양·비가림시설(전통시장

----- 도시미관-----
-----소방서장이 소화
· 구조-----
----- 없다고-----
----- 해당한다)

5. -----
----- 꽃집

6. 경량구조로 된 농지나 산림
경영 목적의 집하장 및 관리
시설. 다만, 주거 목적은 제외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사용승인) -----

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전면 책임 감리대상 건축물
2. (생략)
3.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으로서 법 제25조에 따라 공사 감리자를 지정한 건축물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과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의 범위는 건축허가(용도변경과 공용 건축물을 포함한다)와 사용승인을 받는 건축물로 한다. 다만, 용도 변경 허가는 건축사가 설계하는 건축물만 해당된다.

-----.

1.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건축물
2. (현행과 같음)
3. -----
---- -- 법 제25조 및 영 제19조제5항에 따라 -----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은 법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공용건축물을 포함한다)로 하며, 업무의 범위 및 업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가설건축물 포함)·대수선 및 용도변경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영 제20조제1항 각 호의

② 영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승인이나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업무 대행자(이하“사용승인검사자”라 한다)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나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 충청남도 건축사회장(이하“건축사회장”이라 한다)이 건축 관계자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시에 건축사사무소를 둔 복수의 건축사를 선정하면 그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제21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건축주나 공사감리자는 건축등이 완료되면 제2항에 따라 건축사회장에게 사용승인검사자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설계자는 도시경관에 지장이 없도록

기준에 따라 선정된 건축사

②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신청을 받는 대로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 충청남도 건축사회장(이하 “건축사회장”이라 한다)에게 업무대행자를 선정해주도록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③ 건축사회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 선정을 의뢰받는 대로 영 제20조제1항과 검사 및 확인업무에 적합한 건축사를 선정하여 시장에게 알려야 하고, 업무대행자에게 검사 및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주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업무대행자는 선정된 날부터 3일 이내

설계하여야 하며, 사용승인검사자는 건축공사 감리 세부기준의 사용승인 등 검사 여부와 위원회 심의사항을 확인하여 관계 법령에 맞고 도시미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 ⑥ (생략)

⑦ 건축사회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검사자의 선정기준과 검사방법 등에 대하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의 실시) ① ~ ③ (생략)

제25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에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한 후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시장에게 제출(건축행정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건축주에게 검사비용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⑤ ~ ⑥ (현행과 같음)

⑦ 건축사회장이 업무대행자의 선정기준과 검사방법 등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업무대행자의 선정과 관련된 절차는 팩스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3조(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대지의 조경) ① -----
----- 300제
곱미터 -----

--.

1. -----

-----10퍼센트 ---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와 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조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2. (생략)

3. 주차장, 운전학원, 물류단지 및 터미널(주차·주행 등에 필요한 부분만 해당된다)

4. (생략)

5. 상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인 것

6. 7. (생략)

<신설>

2. 연면적 합계 1천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7퍼센트 이상

3. -----

---3퍼센트---

② -----

1. 2. (현행과 같음)

3. ----운전학원-----

4. (현행과 같음)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구역의 건축물

6. 7. (현행과 같음)

③ 영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장 및 물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식수 등 조경을 완화할 수 있다.

1. 공장(연면적 합계 2천 제곱

③ (생 략)

제26조(조경 기준)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을 적용한다.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등)

① 영 제28조제2항에서“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생 략)

2. 창고시설(농축수산업용 창고만 해당된다)

3. (생 략)

② (생 략)

제29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57조제1항과 영

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2. 물류시설(연면적 합계 2천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하며,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대지면적(주차장은 제외한다)의 5퍼센트 이상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6조(조경 기준) -----

-국토교통부장관-----
-----.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등)

① -----

-----.

1. (현행과 같음)

2.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용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 할 수 없다. <단서 신설>

1. ~ 5. (생략)

제31조(맞벽건축과 연결복도) ① 영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서로간의 대지를 말한다.

② (생략)

제32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①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지와 도로(이면도로 부분은 기간도로를 포함한다) 사이 또는 도로 반대편에 시설녹지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이하“공지”라 한

----- 다만, 대지이용 상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거나 도로를 확보하는 등 불가피한 분할은 제외한다.

1. ~ 5. (현행과 같음)

제31조(맞벽건축과 연결복도)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은 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서로간의 대지

2. 한옥마을 등 한옥 보존·진흥을 위해서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건축물의 높이 완화)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가 있으면 공지를 앞면도로
너비(폭 15미터까지만 해당한
다)에 포함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3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
축물의 높이 제한) ①·② (생
략)

③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높
이 3미터 이하로서 연면적이 1
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 건축물
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신 설>

④ ~ ⑥ (생 략)

제34조(이행강제금의 산정) ① 법
제80조제1항과 제4항 단서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영 별표 15
제3호와 제15호에 해당하는 것
을 포함한다)에 대한 이행강제
금의 산정 등은 다음 각 호와

너비에 포함(폭 15미터까지만
해당하며 공지가 2개소 이상으
로 합계가 15미터를 넘는 부분
은 제외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3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
축물의 높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

1. 높이 3미터 이하로서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 건축
물

2. 인접 대지 소유주와 합의하
여 건축하는 2층 이하로서 높
이 8미터 이하인 건축물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34조(이행강제금 산정·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및 영 별표
15의 제13호에 따른 위반건축
물 이행강제금을 위반행위의 종
류별로 차등 산정하고 위반동기
· 용도· 형태 등에 따라 감경하

같이 한다.

1. 산정기준: 법 제80조제1항제
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
의 4분의 1

2. 부과횟수: 3회

②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이
행강제금 산정에 「질서위반행
위규제법」 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신 설>

<신 설>

제35조(공작물의 준용) 영 제118
조제1항제9호와 제10호에 따른
공작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
만, 농축수산업용과 다른 법령
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구조부분 안전검사를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1. 높이 6미터를 넘는 레미콘

기 위한 이행강제금 산정 및 감
경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공사 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영 별표 15의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③ 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이행
강제금은 연1회씩 반복하여 부과
할 수 있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
은 3회까지만 반복하여 부과한
다.

④ 이행강제금을 자진납부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령」 제5조를 준용한다.

제35조(공작물의 준용) -----

-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

용 시설-----

-----.

1. ----8미터-----

혼합기·호이스트(공사용은 제외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제조시설	----- ----- ----- --
2. 높이 <u>6미터</u>를 넘는 시멘트 저장창고·건조시설·유류 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저장시설	2. ---- <u>8미터</u>----- ----- -----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공주시의회 제1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4. 6. 25)
에서 의결된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시 덕 인

2014년 7월 1일

공주시 조례 제934호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에 따라서 공주시 재난관리기금을 설
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공주시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금
3. 그 밖에 이자수입금 등

제3조(기금의 용도) 이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 가.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 나. 재난의 예방에 관한 홍보물 제작
 - 다. 안전문화 활동 육성·지원 사업 및 재난대응대비 훈련
 - 라.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장비·물품 구입
 - 마.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 시설로서 공주시(이하"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및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
3. 국가 또는 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재난피해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수해, 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가뭄 재해 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4.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5.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6.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

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용자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제4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용자 등) ① 영 제74조제6

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
비(이사비용에 한한다)를 지원한다.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용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
트 이하로 하고 용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용자기금 규모와
용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기금의 용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 적립

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을 장기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은 제3조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운
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약정 체결된 시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회계 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7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등)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업무 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주시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공주시 소속 국장·단장 및 담당관·과

장·소장 중에서 제2항에 따라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1명을 두되, 재난관리기금 업무 담당이 된다.

제9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지난 연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되고 있는 기금의 경과조치) 이 조례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본다.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시 덕 인

2014년 7월 1일

공주시 규칙 제465호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2호로 한다.

제9조제2항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호 서식부터 별지 제3-1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 서식)

공동상표 사용 승인신청서					
신청인	생산자명		조직원수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생산·판매계획	품목(품종)			생산기간	~
	출하기간	~	경영규모	(ha, 두,평)	
	생산계획량	톤	상표사용출하계획량	톤	
	선별장, 포장 (공장, 사업장) 소재지				
사용원료 (가공품에 한함)	주 원 료		부 원 료		
	주생산지역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5조 및 동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농 · 축 · 임산물		가공품 · 공예품		
	1.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2.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 1부 3.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1.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2. 신청품목의 제조공정개요서 1부 3.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 1부 4. 최근 6개월간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 허가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별지 제3-1호서식)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생산자명			대표자명 (참여농가수 호)
품 목			출하계획량
1. 일반여건	생산자 자질		
	운 영 경 력	년 월 일 구성 (경력 년)	
	대외신용,성가도		
	생산(출하)물량	생산계획: 톤, 출하계획 : 톤	
	상표사용출하량	톤, 매	
	판매처확보		
2. 생산여건	생산입지조건		
	생산기반규모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현황		
	보유기계장비		
3. 품질관리 여 건	선 별 방 식	개별단위선별(), 조직공동선별()	
	자체품질관리		
	교육훈련현황		
	집하선별시설		
	선별기계장비		
	저온,예냉시설		
	리콜제 방법		
4. 특기사항			
※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 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 첨부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사용승인 신청 및 기간)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 인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 다. 1. 품질준수 각서: 별지 제3-1 호 서식 2. (생략) 3. 생산자별 조서(단체에 한함): 별지 제3-3호 서식 4. (생략) 5. 생산자 조직 확인서(해당기 관 발행), 법인등기부등본 또 는 사업자등록증 ③ (생략)	제9조(사용승인 신청 및 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삭 제> 1. (현행 제2호와 같음) <삭 제> 2. (현행 제4호와 같음)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시 덕 인

2014년 7월 1일

공주시 규칙 제466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1호를 제2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제5호 중 “행정 규제 및 행정서비스” 를 “행정서비스” 로 한다.

별표 1, 별표 3, 별표 4, 별표 6 및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기획담당관) ① (생략)	제6조(기획담당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담당관의 설치목적은 시 미래비전 설정과 시정 종합 기획,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 보장 등에 있고, 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② ----- ----- ----- ----- ----- -----.
1. ~ 20. (생략)	1. ~ 20. (현행과 같음)
<신설>	21.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21. (생략)	22. (현행 제21호와 같음)
제7조(인사담당관) ① (생략)	제7조(인사담당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인사담당관의 설치목적은 시의 조직과 인력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무원의 적재적소에 임용하며, 후생복지를 증진함으로써 조직의 발전과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데 있고, 지속적인 특별사법경찰활동으로 민생안정을 강화하는데 있으며, 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2.10.	② ----- ----- ----- ----- ----- ----- ----- ----- ----- -----

26. 2013.7.15.]	-----
1. ~ 4. (생 략)	-----
5. <u>행정 규제 및 행정서비스</u> 현	1. ~ 4. (현행과 같음)
장 운영 총괄	5. <u>행정서비스</u> -----
6. ~ 25. (생 략)	-----
	6. ~ 25. (현행과 같음)

[별표 1]

읍·면·동장의 직급 (제49조 관련)

읍·면·동별	직 위	직 급
유구읍사무소	유구읍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이인면사무소	이인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탄천면사무소	탄천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계룡면사무소	계룡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반포면사무소	반포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의당면사무소	의당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정안면사무소	정안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우성면사무소	우성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사곡면사무소	사곡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신평면사무소	신평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중학동주민센터	중학동장	지방행정사무관, <u>지방사회복지사무관</u> 지방시설사무관
웅진동주민센터	웅진동장	지방행정사무관, <u>지방사회복지사무관</u>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금학동주민센터	금학동장	지방행정사무관, <u>지방사회복지사무관</u>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옥룡동주민센터	옥룡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신관동주민센터	신관동장	지방행정사무관, <u>지방사회복지사무관</u>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월송동주민센터	월송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별 표3)

공주시 지방공무원 직렬별 정원표

(단위 : 명)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 · 면 · 동			
						계	읍	면	동
총 계	998	534	17	157	62	228	21	134	73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962	529	17	127	61	228	21	134	73
4급 소계	6	4	1	1					
지방서기관	1	1							
지방기술서기관	1			1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	4	3	1						
5급 소계	51	25	2	5	3	16	1	9	6
지방행정사무관	6	6							
지방의무사무관	1			1					
지방행정·사회복지사무관	2	2							
지방행정·사서사무관	1				1				
지방행정·공업사무관	1	1							
지방행정·농업사무관	1	1							
지방행정·녹지사무관	1	1							
지방행정·환경사무관	2	2							
지방행정·시설사무관	15	11	2		2				
지방행정·사회복지·시설사무관	3					3			3
지방행정·농업사무관·농촌지도관	1			1					
지방행정·농업·보건사무관	1					1		1	
지방행정·농업·녹지사무관	1					1		1	
지방행정·농업·시설사무관	8					8	1	7	
지방행정·보건·간호사무관	1			1					
지방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사무관	3					3			3
지방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사무관	1			1					
지방행정·시설·방송통신사무관	1	1							
지방행정·농업·수의사무관·농촌지도관	1			1					
6급 소계	251	142	3	40	13	53	5	36	12
지방행정주사	75	52	2		6	15	1	9	5
지방세무주사	2	2							
지방사회복지주사	5	5							
지방농업주사	2			2					
지방의료기술주사	1			1					
지방녹지주사	3	3							
지방시설주사	12	12							
지방보건주사	1			1					
지방보건진료주사	16			16					

(별표3)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계	읍	면	동
지방환경주사	2	2							
지방행정·세무주사	5	4				1			1
지방행정·사회복지주사	16	5			1	10	1	6	3
지방행정·전산주사	2	2							
지방행정·사서주사	2				2				
지방행정·공업주사	5	5							
지방행정·농업주사	12	1		4		7	1	3	3
지방행정·녹지주사	4	3			1				
지방행정·보건주사	4	2		2					
지방행정·환경주사	4	4							
지방행정·시설주사	26	24	1		1				
지방행정·방송통신주사	1	1							
지방농업·수의주사	1			1					
지방농업·해양수산주사	1			1					
지방농업주사·농촌지도사	2			2					
지방보건·간호주사	3			3					
지방행정·세무·농업주사	7					7	1	6	
지방행정·사회복지·보건주사	4	1				3		3	
지방행정·전산·시설주사	1	1							
지방행정·공업·환경주사	2	2							
지방행정·공업·보건주사	1	1							
지방행정·공업·시설주사	2	2							
지방행정·녹지·시설주사	1	1							
지방행정·농업·시설주사	11	2				9	1	8	
지방행정·간호·보건주사	1			1					
지방행정·환경·시설주사	1	1							
지방사회복지·보건·간호주사	1			1					
지방농업·녹지·시설주사	1					1		1	
지방행정·시설주사·농촌지도사	1	1							
지방보건·간호·의료기술주사	4			4					
지방운전주사	2	2							
지방위생주사	1				1				
지방열관리운영주사	1			1					
지방전기운영주사	1	1							
지방기계운영주사	1				1				
7급 소계	280	175	4	28	15	58	5	31	22
지방행정주사보	75	55	2	1	5	12	2	2	8
지방세무주사보	7	7							
지방전산주사보	2	2							
지방사회복지주사보	19	7				12		6	6
지방사서주사보	4				4				

(별표3)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계	읍	면	동
지방공업주사보	6	4		1	1				
지방농업주사보	3			3					
지방녹지주사보	3	3							
지방수의주사보	1			1					
지방보건주사보	2			2					
지방의료기술주사보	1			1					
지방간호주사보	1			1					
지방환경주사보	3	3							
지방시설주사보	26	26							
지방방송통신주사보	2	1			1				
지방행정·전산주사보	5	5							
지방행정·세무주사보	12	3				9	1	5	3
지방행정·사회복지주사보	14	6				8	1	6	1
지방행정·사서주사보	1				1				
지방행정·공업주사보	5	4			1				
지방행정·농업주사보	16	2		2		12		10	2
지방행정·녹지주사보	5	4				1		1	
지방행정·보건주사보	2	1		1					
지방행정·환경주사보	2	2							
지방행정·시설주사보	19	15	1			3	1	1	1
지방행정·방송통신주사보	1	1							
지방전산·방송통신주사보	1	1							
지방사회복지·보건주사보	1			1					
지방공업·환경주사보	3	3							
지방농업주사보·농촌지도사	2			2					
지방농업·수의주사보	3	1		2					
지방농업·해양수산주사보	1			1					
지방녹지·시설주사보	1	1							
지방보건·의료기술주사보	1			1					
지방보건·간호주사보	3			3					
지방의료기술·간호주사보	1			1					
지방환경·시설주사보	1	1							
지방행정·공업·시설주사보	1	1							
지방행정·시설·해양수산주사보	1	1							
지방사회복지·보건·간호주사보	2	2							
지방보건·의료기술·간호주사보	1			1					
지방식품위생주사보	2			2					
지방운전주사보	6	6							
지방위생주사보	2	1				1			1
지방시설관리주사보	1	1							
지방통신운영주사보	1				1				
지방전기운영주사보	2	2							

(별표3)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계	읍	면	동
지방기계운영주사보	5	2	1	1	1				
지방열관리운영주사보	1	1							
8급 소계	225	116	3	38	13	55	4	34	17
지방행정서기	44	25	3		1	15	2	6	7
지방전산서기	1	1							
지방세무서기	10	9				1		1	
지방사회복지서기	10	4				6		6	
지방사서서기	2				2				
지방공업서기	3	1			2				
지방농업서기	4			4					
지방녹지서기	2	2							
지방보건서기	4			4					
지방보건진료서기	2			2					
지방의료기술서기	8			8					
지방환경서기	2	2							
지방시설서기	19	10			1	8		8	
지방행정·전산서기	3	2			1				
지방행정·세무서기	9	1				8	1	3	4
지방행정·사회복지서기	12	8			1	3		2	1
지방행정·공업서기	6	6							
지방행정·농업서기	8	2		1		5	1	2	2
지방행정·녹지서기	2	2							
지방행정·보건서기	3					3		3	
지방행정·환경서기	3	3							
지방행정·시설서기	20	17				3		1	2
지방전산·보건서기	1			1					
지방공업·환경서기	1	1							
지방보건·의료기술서기	3			3					
지방보건·간호서기	7			7					
지방의료기술·간호서기	2			2					
지방환경·시설서기	1	1							
지방행정·전산·방송통신서기	1	1							
지방행정·농업서기·농촌지도사	1	1							
지방행정·농업·시설서기	1	1							
지방행정·보건·간호서기	1			1					
지방행정·사회복지·간호서기	2	1		1					
지방간호·보건·의료기술서기	1			1					
지방운전서기	10	9			1				
지방위생서기	6			1	2	3		2	1
지방전기운영서기	1				1				
지방기계운영서기	6	4		1	1				

(별표3)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계	읍	면	동
지방열관리운영서기	1			1					
지방사무운영서기	2	2							
9급 소계	149	67	4	15	17	46	6	24	16
지방행정서기보	27	9		1	2	15	2	9	4
지방사회복지서기보	10	3				7	2	2	3
지방사서서기보	1				1				
지방공업서기보	2	1			1				
지방농업서기보	2			1		1		1	
지방복지서기보	1	1							
지방보건서기보	2			2					
지방환경서기보	2	2							
지방시설서기보	2	1				1	1		
지방행정·세무서기보	4	1				3		2	1
지방행정·전산서기보	1	1							
지방행정·사회복지서기보	7	1				6		1	5
지방행정·공업서기보	2	1			1				
지방행정·농업서기보	6	1		1		4		4	
지방행정·보건서기보	1			1					
지방행정·환경서기보	2	2							
지방행정·시설서기보	5	4				1		1	
지방전산·방송통신서기보	1	1							
지방사회복지·보건서기보	1	1							
지방사회복지·시설서기보	1	1							
지방사서·공업서기보	1				1				
지방보건·의료기술서기보	3			3					
지방행정·시설·복지서기보	1	1							
지방행정·전산·방송통신서기보	1				1				
지방속기서기보	2		2						
지방운전서기보	25	19	2	2	2				
지방위생서기보	10			1	3	6		3	3
지방시설관리서기보	1	1							
지방건축운영서기보	1	1							
지방통신운영서기보	1	1							
지방전기운영서기보	1				1				
지방기계운영서기보	5	2		1	1	1	1		
지방사무운영서기보	17	11		2	3	1		1	
연구직 계	5	4			1				
지방학예연구사	3	2			1				
지방기록연구사	2	2							
지도직 계	30			30					
지도관 소계	3			3					

(별표3)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 · 면 · 동			
						계	읍	면	동
지방농촌지도관·행정·농업사무관	1			1					
지방농촌지도관·농업사무관	1			1					
지방농촌지도관	1			1					
지도사 소계	27			27					
지방농촌지도사	23			23					
지방농촌지도사·행정주사	1			1					
지방농촌지도사·농업주사	1			1					
지방농촌지도사·행정주사보	1			1					
지방농촌지도사·농업주사보	1			1					

[별표 4]

공주시 본청 지방공무원 직렬별 정원표

구 분	계	담당관					시민국										안전산업국										성장전략사업단			
		소	시	기	인	정	소	사	복	민	회	세	문	관	문	토	소	안	경	건	산	도	하	교	환	청	수	소	공	5
		정	획	사	보	감	회	지	원	계	무	화	체	광	화	지	계	전	관	제	설	령	시	가	통	경	소	도	공	도
총계	534	80	20	24	15	21	193	27	26	18	24	29	14	18	15	22	231	27	18	24	19	15	24	25	17	36	26	30	13	17
경우직 계	1	1	1																											
시장	1	1	1																											
일반직 계	529	77	19	24	13	21	191	27	26	18	24	29	14	18	13	22	231	27	18	24	19	15	24	25	17	36	26	30	13	17
4급 소계	4	1	1				1	1									1	1										1	1	
지방서기관	1	1	1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	3						1	1									1	1										1	1	
5급 소계	25	4	1	1	1	1	9	1	1	1	1	1	1	1	1	1	10	1	1	1	1	1	1	1	1	1	1	2	1	1
지방행정사무관	6	3	1	1	1		3			1	1	1																		
지방행정·사회복지사무관	2						2	1	1																					
지방행정·공업사무관	1																1							1						
지방행정·농업사무관	1																											1		1
지방행정·복지사무관	1																1				1									
지방행정·환경사무관	2																2								1	1				
지방행정·시설사무관	11						4						1	1	1	1	6	1	1	1		1	1				1	1	1	
지방행정·시설·방송통신사무관	1	1				1																								
6급 소계	142	23	6	7	4	6	48	6	7	4	5	7	4	5	4	6	62	9	5	7	6	5	5	7	5	7	6	9	4	5
지방행정주사	52	17	5	6	4	2	19	1	1	3	4	1	3	4	1	1	12	3	3	1				3		1	1	4	1	3
지방세무주사	2						2					2																		
지방사회복지주사	5						5	3	2																					
지방복지주사	3																3					3								
지방시설주사	12						3								1	2	9	1		2		2	2				2			
지방환경주사	2																2								1	1				
지방행정·세무주사	4						4					4																		
지방행정·사회복지주사	5						5	1	4																					
지방행정·전산주사	2	1				1																						1		1
지방행정·공업주사	5						1			1							4		1					2		1				
지방행정·농업주사	1																1	1												
지방행정·복지주사	3																3				3									
지방행정·보건주사	2	1				1											1										1			
지방행정·환경주사	4																4								3	1				
지방행정·시설주사	24	2		1		1	6						1	1	2	2	13	3	1	4		3	1				1	3	3	
지방행정·방송통신주사	1	1				1																								
지방행정·사회복지·보건주사	1						1	1																						
지방행정·전산·시설주사	1						1										1													
지방행정·공업·환경주사	2																2							1	1					
지방행정·공업·보건주사	1																1										1			
지방행정·공업·시설주사	2						1				1						1						1							
지방행정·복지·시설주사	1																1						1							
지방행정·농업·시설주사	2																2	1					1							
지방행정·환경·시설주사	1																1									1				
지방행정·시설주사·농촌지도사	1																											1		1
지방문건주사	2	1	1														1									1				
지방전기운영주사	1																1							1						
7급 소계	175	34	10	10	6	8	62	9	7	5	10	9	4	5	3	10	70	9	5	10	6	4	10	8	5	5	8	9	4	5
지방행정주사보	55	24	9	7	6	2	13	1	1	3	2	1	2	1	1	1	15	4	3	1		1		3	1		2	3	2	1
지방세무주사보	7						7					7																		
지방전산주사보	2						1				1																	1		1
지방사회복지주사보	7						7	4	3																					
지방공업주사보	4						1				1						3		1								2			
지방복지주사보	3																3				3									
지방환경주사보	3																3							1		1	1			
지방시설주사보	26	1				1	9				1		1	1	1	5	15	2	1	4		2	5				1	1	1	
지방방송통신주사보	1	1				1																								
지방행정·전산주사보	5	1				1	2									2												2		2

구 분	계	담당관					시민국										안전산업국										성장전략사업단			
		소	시	기	인	정	소	사	복	민	회	세	문	관	문	토	소	안	경	건	산	도	허	교	환	청	수	소	공	5
		계	정	관	당	당	보	회	지	원	계	무	화	광	재	지	계	전	관	제	설	임	재	가	통	경	소	도	개	발
지방행정·세무주사보	3	1		1		2				1	1																			
지방행정·사회복지주사보	6	1				5	3	2																						
지방행정·공업주사보	4					2			1				1			2								2						
지방행정·농업주사보	2															1							1					1	1	
지방행정·복지주사보	4															4					3		1							
지방행정·보건주사보	1	1				1																								
지방행정·환경주사보	2															2											2			
지방행정·시설주사보	15					5				1			1	1	2	9	1		3		1	2	1		1		1		1	1
지방행정·방송통신주사보	1					1							1																	
지방전산·방송통신주사보	1	1				1																								
지방공업·환경주사보	3															3								1	2					
지방농업·수역주사보	1															1	1													
지방복지·시설주사보	1															1	1													
지방환경·시설주사보	1															1								1						
지방행정·공업·시설주사보	1	1		1																										
지방행정·시설·해양수산주사보	1					1							1																	
지방사회복지·보건·간호주사보	2					2	1	1																						
지방안전주사보	6	2	1	1		1				1						3			2					1						
지방위생주사보	1					1				1																				
지방시설관리주사보	1															1							1							
지방전기운영주사보	2															2							1			1				
지방기계운영주사보	2					1			1							1										1				
지방열관리운영주사보	1					1				1																1				
8급 소개	116	11	2	3	2	4	50	6	8	3	5	10	4	6	5	3	50	4	5	4	3	4	6	7	4	6	7	5	1	4
지방행정서기	25	4	1	2	1	15	1		2	3		3	4	2		4		2					1	1			2		2	
지방전산서기	1	1				1																								
지방세무서기	9					9						9																		
지방사회복지서기	4					4	1	3																						
지방공업서기	1															1			1											
지방복지서기	2															2				1		1								
지방환경서기	2															2								1	1					
지방시설서기	10					3								1	2	7			2		2	1				2				
지방행정·전산서기	2	1		1																							1		1	
지방행정·세무서기	1					1						1																		
지방행정·사회복지서기	8	1				7	3	4																						
지방행정·공업서기	6					3		1						1	1		3	1	1				1							
지방행정·농업서기	2															2	1					1								
지방행정·복지서기	2															2				2										
지방행정·환경서기	3															3						1		2						
지방행정·시설서기	17					4						1	1	1	1	12	1	2			2	2	2		1	2	1	1		
지방공업·환경서기	1															1										1				
지방환경·시설서기	1															1											1			
지방행정·전산·방송통신서기	1	1				1																								
지방행정·농업서기·농촌지도사	1																										1		1	
지방행정·농업·시설서기	1															1	1													
지방행정·사회복지·간호서기	1					1	1																							
지방안전서기	9					2				2						7							3		3	1				
지방기계운영서기	4	1	1			1			1							2			1						1					
지방사무운영서기	2	2			1	1																								
9급 소개	67	4		2		2	21	4	3	5	3	2	1	1		2	38	3	2	2	3	1	2	2	2	17	4	4	2	2
지방행정서기보	9					5			2	1		1	1			3		1				1	1				1		1	
지방사회복지서기보	3					3	3																							
지방공업서기보	1															1										1				
지방복지서기보	1															1				1										
지방환경서기보	2															2								2						
지방시설서기보	1					1										1														
지방행정·세무서기보	1					1						1																		
지방행정·전산서기보	1					1										1														

구 분	계	담당관					시민국										안전산업국										성장전략사업단				
		소	시	기	인	정	소	사	복	민	회	세	문	관	문	토	소	안	경	건	산	도	해	교	환	청	수	소	공	5	
		계	정	획	사	보	회	회	지	원	계	우	화	광	화	재	지	계	전	관	제	설	림	시	가	통	경	소	도	계	공
지방행정·사회복지서기보	1						1	1																							
지방행정·공업서기보	1						1		1																						
지방행정·농업서기보	1	1		1																											
지방행정·환경서기보	2																2									1	1				
지방행정·시설서기보	4						1				1						1	1										2	1	1	
지방전산·방송통신서기보	1	1				1																									
지방사회복지·보건서기보	1						1		1																						
지방사회복지·시설서기보	1						1		1																						
지방행정·시설·복지서기보	1																1					1									
지방안전서기보	19						1				1						18	1		1	1					15					
지방시설관리서기보	1																1								1						
지방건축운영서기보	1																1								1						
지방통신운영서기보	1	1				1																									
지방기계운영서기보	2																2	1									1				
지방사무운영서기보	11	1		1			4			3		1					5		1	1		1				1	1	1	1		
연구직 계	4	2			2		2								2												1	1			
지방학예연구사	2						2								2																
지방기록연구사	2	2			2																										

[별표 6]

공주시 직속기관 지방공무원 직렬별 정원표

구 분	계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 계	보 건 과	건 강 과	소 계	농 업 과	축 산 과	농 촌 진 흥 과	기 술 보 급 과
총계	157	89	70	19	68	21	14	16	17
일반직 계	127	89	70	19	38	20	14		4
4급 소계	1	1	1						
지방기술서기관	1	1	1						
5급 소계	5	3	1	2	2	1	1		
지방의무사무관	1	1		1					
지방행정·농업사무관·농촌지도관	1				1	1			
지방행정·보건·간호사무관	1	1	1						
지방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사무관	1	1		1					
지방행정·농업·수의사무관·농촌지도관	1				1		1		
6급 소계	40	30	25	5	10	5	5		
지방농업주사	2				2	2			
지방의료기술주사	1	1	1						
지방보건주사	1	1	1						
지방보건진료주사	16	16	16						
지방행정·농업주사	4				4	2	2		
지방행정·보건주사	2	2	2						
지방농업·수의주사	1				1		1		
지방농업·해양수산주사	1				1		1		
지방농업주사·농촌지도사	2				2	1	1		
지방보건·간호주사	3	3	2	1					
지방행정·간호·보건주사	1	1		1					
지방사회복지·보건·간호주사	1	1		1					
지방보건·간호·의료기술주사	4	4	2	2					
지방열관리운영주사	1	1	1						
7급 소계	28	15	9	6	13	6	5		2
지방행정주사보	1	1	1						
지방공업주사보	1				1				1
지방농업주사보	3				3	3			
지방수의주사보	1				1		1		
지방보건주사보	2	2	2						
지방의료기술주사보	1	1		1					
지방간호주사보	1	1		1					
지방행정·농업주사보	2				2	2			

구 분	계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 계	보 건 과	건 강 과	소 계	농 업 과	축 산 과	농 촌 진 흥 과	기 술 보 급 과
지방행정·보건주사보	1	1	1						
지방사회복지·보건주사보	1	1		1					
지방농업주사보·농촌지도사	2				2	1	1		
지방농업·수의주사보	2				2		2		
지방농업·해양수산주사보	1				1		1		
지방보건·의료기술주사보	1	1	1						
지방보건·간호주사보	3	3	1	2					
지방의료기술·간호주사보	1	1		1					
지방보건·의료기술·간호주사보	1	1	1						
지방식품위생주사보	2	2	2						
지방기계운영주사보	1				1				1
8급 소계	38	31	27	4	7	5	1		1
지방농업서기	4				4	3	1		
지방보건서기	4	4	4						
지방보건진료서기	2	2	2						
지방의료기술서기	8	8	7	1					
지방행정·농업서기	1				1	1			
지방전산·보건서기	1	1	1						
지방보건·의료기술서기	3	3	3						
지방보건·간호서기	7	7	5	2					
지방의료기술·간호서기	2	2	2						
지방행정·보건·간호서기	1	1		1					
지방행정·사회복지·간호서기	1	1	1						
지방간호·보건·의료기술서기	1	1	1						
지방위생서기	1	1	1						
지방기계운영서기	1				1				1
지방열관리운영서기	1				1	1			
9급 소계	15	9	7	2	6	3	2		1
지방행정서기보	1				1		1		
지방농업서기보	1				1		1		
지방보건서기보	2	2	2						
지방행정·농업서기보	1				1	1			
지방행정·보건서기보	1	1	1						
지방보건·의료기술서기보	3	3	2	1					
지방운전서기보	2	2	1	1					
지방위생서기보	1				1	1			
지방기계운영서기보	1				1				1
지방사무운영서기보	2	1	1		1	1			

구 분	계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 계	보 건 과	건 강 과	소 계	농 업 과	축 산 과	농 촌 진 흥 과	기 술 보 급 과
지도직 계	30				30	1		16	13
지도관 소계	3				3	1		1	1
지방농촌지도관·행정·농업사무관	1				1	1			
지방농촌지도관·농업사무관	1				1			1	
지방농촌지도관	1				1				1
지도사 소계	27				27			15	12
지방농촌지도사	23				23			13	10
지방농촌지도사·행정주사	1				1			1	
지방농촌지도사·농업주사	1				1				1
지방농촌지도사·행정주사보	1				1			1	
지방농촌지도사·농업주사보	1				1				1

[별표 8]

공주시 읍·면·동 지방공무원 직렬별 정원표

구 분	계	읍		면										동						
		소 계	유 구 읍	소 계	이 인 면	탄 천 면	계 룡 면	반 포 면	의 당 면	정 안 면	우 성 면	사 곡 면	신 풍 면	소 계	중 학 동	웅 진 동	금 학 동	옥 룡 동	신 관 동	월 송 동
총계	228	21	21	134	14	14	17	15	14	15	17	14	14	73	10	11	10	14	16	12
일반직 계	228	21	21	134	14	14	17	15	14	15	17	14	14	73	10	11	10	14	16	12
5급 소계	16	1	1	9	1	1	1	1	1	1	1	1	1	6	1	1	1	1	1	1
지방행정·사회복지·시설사무관	3													3	1			1		1
지방행정·농업·보건사무관	1			1									1							
지방행정·농업·녹지사무관	1			1						1										
지방행정·농업·시설사무관	8	1	1	7	1	1	1	1	1		1	1								
지방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사무관	3													3		1	1		1	
6급 소계	53	5	5	36	4	4	4	4	4	4	4	4	4	12	2	2	2	2	2	2
지방행정주사	15	1	1	9	1	1	1	1	1	1	1	1	1	5	1	2	1			1
지방행정·세무주사	1													1	1					
지방행정·사회복지주사	10	1	1	6	1		1		1	1	1		1	3				2	1	
지방행정·농업주사	7	1	1	3	1	1						1		3			1		1	1
지방행정·세무·농업주사	7	1	1	6			1	1	1	1	1		1							
지방행정·사회복지·보건주사	3			3		1		1				1								
지방행정·농업·시설주사	9	1	1	8	1	1	1	1	1		1	1	1							
지방농업·녹지·시설주사	1			1						1										
7급 소계	58	5	5	31	3	4	3	3	4	3	3	4	4	22	2	4	4	4	4	4
지방행정주사보	12	2	2	2							1	1		8	1	2	1	2	1	1
지방사회복지주사보	12			6	1	1	1		1		1		1	6	1	1	1	1	1	1
지방행정·세무주사보	9	1	1	5	1		1	1	1			1		3		1			1	1
지방행정·사회복지주사보	8	1	1	6		1		1	1	1		1	1	1					1	
지방행정·농업주사보	12			10	1	2	1	1	1	1	1	1	1	2			1			1
지방행정·녹지주사보	1			1						1										
지방행정·시설주사보	3	1	1	1									1	1				1		
지방위생주사보	1													1			1			
8급 소계	55	4	4	34	4	3	4	4	3	4	6	3	3	17	2	1	1	5	6	2
지방행정서기	15	2	2	6	1		2		1			1	1	7	1	1		2	3	
지방세무서기	1			1		1														
지방사회복지서기	6			6	1			1		1	1	1	1							
지방시설서기	8			8	1	1	1	1	1	1	1	1								
지방행정·세무서기	8	1	1	3	1						1		1	4	1		1		1	1
지방행정·사회복지서기	3			2		1					1			1				1		
지방행정·농업서기	5	1	1	2					1		1			2				1	1	
지방행정·보건서기	3			3			1			1	1									
지방행정·시설서기	3			1				1						2					1	1
지방위생서기	3			2				1		1				1				1		
9급 소계	46	6	6	24	2	2	5	3	2	3	3	2	2	16	3	3	2	2	3	3
지방행정서기보	15	2	2	9	1		1	1	1	1	1	2	1	4		1	1		1	1
지방사회복지서기보	7	2	2	2			2							3	1			1	1	
지방농업서기보	1			1			1													
지방시설서기보	1	1	1																	

구 분	계	읍		면										동						
		소	유	소	이	탄	계	반	의	정	우	사	신	소	중	웅	금	옥	신	월
		계	읍	계	면	면	면	면	면	면	면	면	면	계	동	동	동	동	동	동
지방행정·세무서기보	3			2				1		1				1				1		
지방행정·사회복지서기보	6			1						1				5	1	1	1		1	1
지방행정·농업서기보	4			4		1		1	1		1									
지방행정·시설서기보	1			1									1							
지방위생서기보	6			3	1	1					1			3	1	1				1
지방기계운영서기보	1	1	1																	
지방사무운영서기보	1			1			1													

공주시 정원관리 기관별 담당배치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시 덕 인

2014년 7월 1일

공주시 훈령 제237호

공주시 정원관리 기관별 담당배치 규정 일부개정규정

공주시 정원관리 기관별 담당배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6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정원관리 기관별로 배치하는 담당

기관별	부서명	담당수	배치하는 담당명	비고
합 계		174		
본 청	소 계	107		
담 당 관	시 정 담 당 관	4	행정, 홍보, 교육지원, 의전	
	기 획 담 당 관	6	기획, 예산, 법무통계, 의회평가, <u>규제개혁추진단</u> , 서울사무소	
	인 사 담 당 관	3	서무, 인사, 후생	
	정 보 감 사 담 당	4	감사, 조사, 정보화, 통신	
시 민 국	사 회 과	5	복지기획, 복지연계, 행복키움지원, 생활보장, 통합조사관리	
	복 지 과	6	노인, 장애인, 여성보육, 아동청소년, 다문화가정, 나래원	
	민 원 과	4	민원행정, 통합민원, 가족등록, 차량등록	
	회 계 과	4	경리, 계약, 재산관리, 청사관리	
	세 무 과	6	세정, 도세, 시세, 징수, 세입, 과표	
	문 화 체 육 과	3	문화예술, 체육지원, 레저시설	
	관 광 과	3	관광진흥, 관광개발, 축제	
	문 화 재 과	3	문화재정책, 문화재관리, 고도보존	
	토 지 과	4	토지행정, 지적관리, 공간정보, 새주소	
안 전 산 업 국	안 전 관 리 과	6	안전정책, 재난관리, 민방위, 특사경지원, 하천관리, 금강사업	
	경 제 과	4	경제정책, 기업유치, 산업단지, 에너지일자리	
	건 설 과	5	건설행정, 농촌개발, 도로계획, 도로시설, 지역개발	
	산 림 과	4	산림자원, 산림보호, 공원녹지, 산림소득	
	도 시 재 생 과	4	도시행정, 도시계획, 공공디자인, 도시개발	
	허 가 과	4	건축행정, 건축허가, 토지산림, 환경건축	
	교 통 과	5	교통행정, 교통안전, 차량관리, 자전거정책, 조명	
	환 경 과	4	환경정책, 녹색성장, 환경지도, 수질관리	
	청 소 과	4	청소행정, 자원순환, 청소시설, 폐기물	
성 장 전 략 사 업 단	수 도 과	5	수도행정,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상수도시설	
	공 공 개 발 사 업	3	행정지원, 복합연수단지, 상생발전	
의 회 사 무 국	의 회 사 무 국	2	도농교류, 농촌혁신, 새마을, 지역마케팅	
직 속 기 관	소 계	24	의정, 의사	
보 건 소	보 건 과	4	보건행정, 방역, 의약, 위생	
	건 강 과	4	건강증진, 가족보건, 방문보건, 출산	
농 업 기 술 센 터	농 업 과	4	농업정책, 농업지원, 농산유통, 원예특작	
	축 산 과	3	축산정책, 가축방역, 축산유통	
	농 촌 진 흥 과	4	지도기획, 인력육성, 생활기술, 자원기술	
	기 술 보 급 과	5	친환경농업, 소득경영, 시설채소, 농업기계, <u>농기계센터남부지소</u>	
사 업 소	소 계	10		
	공 공 시 설 관 리	3	관리, 운영, 공연기획	
	관 광 경 영 사 업	4	관리, 사적운영, 한옥마을, 석장리박물관	
	시 립 도 서 관	3	운영, 웅진관, 강북관	
읍 면 동	소 계	31	종합사회복지	
면	유 구 읍	4	총무, 주민생활, 민원, 산업개발	
	이 인 면	3	총무, 복지민원, 산업개발	
	탄 천 면	3	총무, 복지민원, 산업개발	
	계 룡 면	3	총무, 복지민원, 산업개발	
	반 포 면	3	총무, 복지민원, 산업개발	
	의 당 면	3	총무, 복지민원, 산업개발	
	정 안 면	3	총무, 복지민원, 산업개발	
	우 성 면	3	총무, 복지민원, 산업개발	
	사 곡 면	3	총무, 복지민원, 산업개발	
	신 풍 면	3	총무, 복지민원, 산업개발	
동	6 동		사무장	

공주시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폐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공 주 시 장 오 시 덕 인

2014년 7월 1일

공주시 훈령 제238호

공주시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폐지규정

공주시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우리시 신축 건물 및 도로명 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해「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6. 12.

공주시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대추골1길 57-12 (옥룡동) 외 2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과(☎840-8480)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6. 12.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세부내역

순번	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자	도로명부여사유	우편번호	고지대상
1	충청남도 공주시 옥룡동 285	충청남도 공주시 대추길 57-12 (옥룡동)	20100112	자연마을 명칭과 일련번호 방식 복합 반영		고지
2	충청남도 공주시 금학동 180-4	충청남도 공주시 수원지영원길 12-2 (금학동)	2010020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고지
3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22-41	충청남도 공주시 반영1로 169 (신관동)	20100202	지역특성과 일련번호 방식 복합 반영		고지
4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223-40	충청남도 공주시 반영3로 54-13(신관동)	20100202	지역특성과 일련번호 방식 복합 반영		고지
5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675-4	충청남도 공주시 한적2길 27-15 (신관동)	20100112	자연마을 명칭과 일련번호 방식 복합 활용		고지
6	충청남도 공주시 금룡동 617-6	충청남도 공주시 한적2길 41-5 (금룡동)	20100112	자연마을 명칭과 일련번호 방식 복합 활용		고지
7	충청남도 공주시 금룡동 617-11	충청남도 공주시 한적2길 37-24 (금룡동)	20100112	자연마을 명칭과 일련번호 방식 복합 활용		고지
8	충청남도 공주시 월미동 387-3, 387	충청남도 공주시 신웅세돌길 15-38 (월미동)	20100202	해당 자연마을 명칭 활용 후 디폴트명과 도로명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구역 명칭 활용		고지
9	충청남도 공주시 석남리 274-9, 273-6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를 중앙1길 76-1	20100112	일련번호방식과 도로특성 반영		고지
10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만수리 54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느리시리길 83	20100112	해전부터 느리지게 넓다 하여 느리이라 불린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고지
11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용양리 396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수터길 108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고지
12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공양리 269-3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송곡로 55-12	20100112	송곡리를 관하는 주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		고지
13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불곡리 167-42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원당3길 23-65	20100112	마을에 소원을 비는 원당이 있다 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고지
14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학불리 545-3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재석굴길 23-6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고지
15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유계리 299-15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팔정말길 6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 활용		고지
16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상룡리 산31-1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상룡길 260	20100112	상룡리를 관통하는 주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상룡길로 부여		고지
17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석송리 208-19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석송마을길 17-5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 활용 후 디폴트명과 도로명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구역 명칭 활용		고지
18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 509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정안농공단지길 7	20100112	사현리에 있는 농공단지를 관통하는 도로로 행정 구역 명칭을 합치하여 정안농공단지길로 부여		고지
19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쌍달리 79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쌍달길 105-52	20100112	행정구역 명칭 반영		고지
20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한천리 59-8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무성산로 531-8	20100112	무성산을 지칭하는 도로명, 한천리, 무성산을 관통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합치하여 무성산로로 부여		고지
21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596-2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를 유구대곡시로 767	20100112	유구읍에서 대곡시를 향하는 도로로 행정 구역 명칭과 대곡시의 명칭을 활용하여 유구대곡시로로 부여		고지
22	충청남도 공주시 신흠면 대룡리 377-10	충청남도 공주시 신흠면 총의로 2398	20090825	총의인의 총령과 정의를 상징		고지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우리시 도로명주소 부여건물 중 도로명 주소 변경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6. 12.

공주시장

○ 도로명주소 : 충남 공주시 유구읍 구계연종길 366-35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과(☎840-8480)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6. 12.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세부내역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연흥리 278, 신36, 255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연흥리 255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구계연흥길 366-35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구계연흥길 366-35	2010.01.12	구계리와 연흥리를 관통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우리시 건물등의 멸실에 따라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및 제25조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6. 12.

공주시장

○ 도로명주소 : 충남 공주시 계룡면 상보안길 73외 1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과(☎840-8480)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6. 12.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등에 의거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세부내역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일	폐지 사유	비고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경천리 605-1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상보안길 73		건물말소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한천리 59-8, 26-13, 26-14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무성산로 535-3		건물말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4년 06월 일

공 주 시 장

1. 사 업 명 : 유구읍 석남리 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위치 : 충남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270-6번지

3. 사업주체

- 성 명 : 동화건설산업(주) 신문식

- 주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03 1726호(우동,오션타워)

4.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5. 사업내용

- | | |
|--|----------------------|
| ○ 분양구분 : 민간분양 | ○ 대지면적 : 4,268㎡ |
| ○ 건축면적 : 870.4325㎡ | ○ 연 면 적 : 6,213.077㎡ |
| ○ 건 폐 율 : 20.39% | ○ 용 적 율 : 143.1% |
| ○ 건설규모 : 아파트 2동 | ○ 세 대 수 : 73세대 |
| ○ 평 형 : 59㎡A형 24세대, 59㎡B형 20세대, 59㎡C형 20세대,
59㎡D형 9세대 | |
| ○ 사업기간 : 2013. 08.30 - 2016.10.30. | |
| ○ 사 업 비 : 7,800,000천원 | |

6. 의제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 계획)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주택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 합니다

2014년 07월 01일

공 주 시 장

1. 사 업 명 : 유구하늘정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위치 :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393-1번지 일원

3. 사업주체

- 상 호 : 부성주택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동연
- 주 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 347, 3층(신림동)

4. 용도지역 : 2종 일반주거지역

5. 사업계획 변경내용

○ 분양구분	기존 변경	일반분양 변경없음	○ 연 면 적	기존 변경	5,087.3804㎡ 변경없음
○ 건축면적	기존 변경	820.476㎡ 변경없음	○ 대지면적	기존 변경	2,728㎡ 변경없음
○ 건 폐 율	기존 변경	30.08% 변경없음	○ 용 적 율	기존 변경	181.21% 변경없음
○ 건설규모	기존 변경	아파트 1동 및 부속건물 변경없음	○ 세 대 수	기존 변경	44세대 변경없음
○ 사업기간	기존 변경	'06.06.20~'12.12.30 '06.06.20~'14.12.30	○ 설 계 자	기존 변경	디벨로퍼CM건축사사무소 아원건축사사무소
○ 사 업 비	기존 변경	8,430,000천원 7,001,992천원	○ 시 공 자	기존 변경	에스아이종합건설(주) 일우종합개발(주)

6. 의제사항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제86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제88조 실시계획의 인가, 도로법 제38조 도로점용허가

의당복합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당복합농공단지의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공주시 경제과(041-840-829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4년 7월 1일

공 주 시 장

▣ 의당복합농공단지 지정

1. 농공단지의 명칭 : 의당복합농공단지
2. 농공단지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가산리 산18-2번지 일원
 - 나. 면 적 : 147,933㎡
3. 농공단지의 지정목적
 - 건설자재 생산기업인 한일시멘트(주)의 시멘트(레미콘, 레미탈)공장을 입지시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지원하고,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농외소득 및 신규 고용창출을 도모
4. 농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 한일시멘트(주) 대표 원인상

5. 농공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가. 개발기간 : 기정 - 2008년 ~ 2014년 6월 30일

변경 - 2008년 ~ 2014년 9월 30일

나. 개발방법 : 민간개발

6. 주요 유치업종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C23)

7. 토지이용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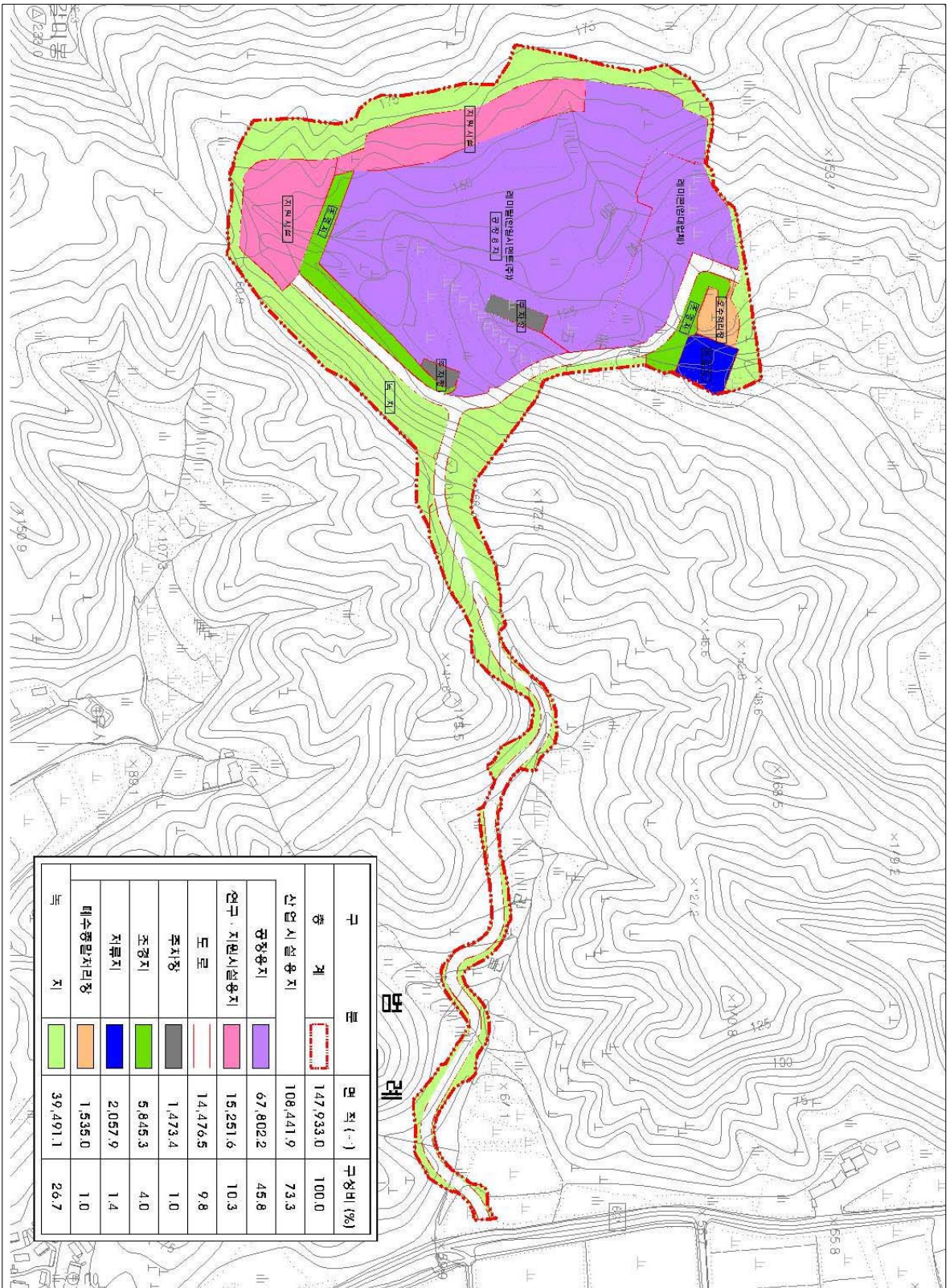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표 >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총 계	147,933.0	100.0	
산업시설용지	108,441.9	73.3	
녹 지	39,491.1	26.7	

< 세부개발계획표 >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총 계		147,933.0	100.0	
산업시설용지		108,441.9	73.3	
공장 용지	계	67,802.2	45.8	
	한일시멘트(주) 직접사용	56,710.6	38.3	
	임 대	11,091.6	7.5	
연구·지원시설용지		15,251.6	10.3	
도 로		14,476.5	9.8	
주차장		1,473.4	1.0	
조경지		5,845.3	4.0	
저류지		2,057.9	1.4	
폐수처리장		1,535.0	1.0	
녹 지		39,491.1	26.7	

< 토지이용계획도 >



나. 기반시설계획

1) 도로계획(변경없음)

◦ 도로 총괄표

구 분			노 선 수	연 장 (m)	면 적(㎡)	비 고
합 계			2	1,362.3	14,476.5	
일반 도로	중로	소 계				
		3 류				
	소로	소 계	2	1,362.3	14,476.5	
		1 류	2	1,362.3	14,476.5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	10	구지도로	512.8	오펜수 처리장	연구·지원 시설용지	단지내도로	농공단지		
기정	소로	1	2	10	구지도로	849.5	가산리 44-6번지	소로1-1	진입도로			
계						1,362.3						

2) 주차장계획

◦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⑤-1	주차장	의당면 가산리 산18-10임 일원	510.3		
기정	⑤-2	주차장	의당면 가산리 산18-13임 일원	963.1		

3) 공원·녹지계획

◦ 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⑦	녹지	완충녹지	의당면 가산리 산18-10임 일원	39,491.1		

4) 방재시설계획

◦ 유수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④	유수지	저류시설	의당면 가산리 산18-13임 일원	2,057.9		

5) 환경기초시설계획

◦ 수질오염방지시설(오 · 폐수처리장)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③	수질오염 방지시설	오·폐수 처리장	의당면 가산리 산18-13임 일원	1,535.0		

8. 농공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기반시설계획

가. 용수공급계획

총 용수량 (㎡/일)	공업용수량 (㎡/일)	생활용수량 (㎡/일)	비 고
280	200	80	단지 내 심정 개발

나. 오 · 폐수처리계획

구 분	용수량 (㎡/일)	계획일 오·폐수량 (㎡/일)	비 고
생활계 오수	80	70.46	분뇨 + 잡배수
산업계 폐수	200	-	산업계폐수는 전량 재이용수로 사 용되므로 폐수발생량은 없음
계	280	70.46	-

다. 폐기물처리시설계획

구 분	합계	폐기물 처리계획			
		소 각	매 립	재활용	위탁처리
총발생량	2.213	0.017	0.012	0.044	2.140
생활폐기물	0.073	0.017	0.012	0.044	-
사업장폐기물	2.140	-	-	-	2.140

라. 전력공급계획

구 분	부지면적 (㎡)	전력원단위 (KW/천㎡·월)	부하율 (%)	전력수요 (MWh/년)	비 고
전력수요	108,441.9	207.52	40	9,000	

마. 통신공급계획

구 분	부지면적 (㎡)	계획인구 (명)	산정원단위	소요대수 (대)	비고
통신수요	108,441.9	134	1회선/5인	27	

9. 수용 · 또는 사용할 토지 · 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게재 생략)

▣ 의당복합농공단지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의당복합농공단지

2.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일시멘트(주) 대표 원인상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사업의 목적 : 농공단지 개발

◦ 사업의 개요

－ 시행방법 : 실수요자 개발

4. 사업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가산리 산18-2번지 일원

나. 면 적 : 147,933㎡

5. 사업의 개발기간(변경)

◦ 개발기간 : 기정-2008년 ~ 2014년 6월 30일

변경-2008년 ~ 2014년 9월 30일

6.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게재 생략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

8. 관계도서는 공주시청(경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
에게 고시합니다.

9. 행위의 제한

◦ 의당복합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불임 :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① 용도지역 결정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계	147,933.0	100.0	
관리지역	147,933.0	100.0	
보전관리지역	-	-	
생산관리지역	-	-	
계획관리지역	147,933.0	100.0	
농림지역	-	100.0	

2.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개발진흥지구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	의당복합 농공단지	산업개발 진흥지구	의당면 가산리	147,933	2009. 2. 4	

②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구역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①	의당복합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 유통형	공주시 의당면 가산리 산18-10번지 일원	147,933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 조서

가. 도로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	10	구지도로	512.8	오페수 처리장	연구·지원 시설용지	단지내도로	농공단지		
기정	소로	1	2	10	구지도로	849.5	가산리 44-6번지	소로1-1	진입도로			
계						1,362.3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⑤-1	주차장	의당면 가산리 산18-10임 일원	510.3		
기정	⑤-2	주차장	의당면 가산리 산18-13임 일원	963.1		

다. 공간시설

■ 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⑦	녹지	완충녹지	의당면 가산리 산8-10임 일원	39,491.1		

라. 방재시설

■ 유수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④	유수지	저류시설	의당면 가산리 산18-13임 일원	2,057.9		

마. 환경기초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③	수질오염 방지시설	오·폐수 처리장	의당면 가산리 산18-13임 일원	1,535.0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

가. 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위 치	도면번호	면적 (㎡)	가구 및 획지		비 고
			위 치	면적(㎡)	
합 계		147,933.0	-	147,933.0	
공주시 의당면 가산리 산18-10번지 일원	①~⑧	147,933.0	①~②	83,053.8	산업시설 (공장 및 지원시설)
			③~⑧	25,388.1	공공시설용지 (도로, 주차장, 저류지, 조경지, 오수처리장)
			⑦	39,491.1	녹지용지

나.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 공장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	
합 계		83,408.6		83,053.8	
②	②-1	83,053.8	가산리 산18-11번지 일원	7,290.9	연구·지원시설
②	②-2		가산리 산18-9번지 일원	7,960.7	연구·지원시설
①	①-1		가산리 60-1번지 일원	56,710.6	공장용지
①	①-2		가산리 60-3번지 일원	11,091.6	공장용지

■ 공공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합 계		25,388.1		25,388.1	
⑤	⑤-1	25,388.1	가산리 산18-10번지 일원	510.3	주차장
⑤	⑤-2		가산리 산18-13번지 일원	963.1	
⑧	⑧-1		가산리 산18-11번지 일원	5,845.3	조경지
④	④-1		가산리 산18-13번지 일원	2,057.9	저류지
③	③-1		가산리 산18-13번지 일원	1,535.0	폐수종말처리장
⑥	⑥-1		가산리 산18-10번지 일원	14,476.5	도로

■ 녹지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	
합 계		39,491.1		39,491.1	
⑦	⑦-1	39,491.1	가산리 산18-10번지 일원	39,491.1	완충녹지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

■ 공장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②	②-1 (연구·지원시설) (의당면 가산리 산18-11번지 일원)	용도	허용	• 공업지역내 허용가능한 건축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 시설			
			불허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높이 (층수)	20m 이하 (4층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배치·형태				• 조망 및 향을 고려하여 배치	
		색채	주조색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계통			
			보조색	• 원색과 가까운 색 금지			
		건축선				3m	
	②-2 (연구·지원시설) (의당면 가산리 산18-9번지 일원)	용도	허용	• 공업지역내 허용가능한 건축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 시설			
			불허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높이 (층수)	20m 이하 (4층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배치·형태				• 조망 및 향을 고려하여 배치	
		색채	주조색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계통			
			보조색	• 원색과 가까운 색 금지			
		건축선				3m	
①	①-1 공장용지) (의당면 가산리 60-1번지 일원)	용도	허용	• 공업지역내 허용가능한 건축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부대시설			
			불허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높이 (층수)	20m 이하 (4층 이하) (구조물높이 85m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배치·형태				• 조망 및 향을 고려하여 배치		
	색채	주조색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계통				
		보조색	• 원색과 가까운 색 금지				
	①-2 (공장용지) (의당면 가산리 60-3번지 일원)	건축선				3m	

■ 공공시설용지

가구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⑤	⑤-1 (주차장) (의당면 가산리 산18-10번지 일원) ⑤-2 (주차장) (의당면 가산리 산18-13번지 일원)	용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 주차장 및 부대시설		
			불허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높이 (층수)	4층이하
		용적률		150% 이하		
		배치·형태		• 조망 및 향을 고려하여 배치		
		색채	주조색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계통 • 원색과 가까운 색 금지		
			보조색	• 원색사용가능하나, 전체면적 30%를 넘지 않도록 함		
		건축선		3m		
④	④-1 (저류지) (의당면 가산리 산18-13번지 일원)	용도	허용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관한 규칙 제 118조 저류시설(부대시설 포함)		
			불허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높이 (층수)	4층이하
		용적률		150% 이하		
		배치·형태		• 조망 및 향을 고려하여 배치		
		색채	주조색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계통 • 원색과 가까운 색 금지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채		
		건축선		3m		
③	③-1 (폐수종말처리장) (의당면 가산리 산18-13번지 일원)	용도	허용	•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부대시설 포함)		
			불허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높이 (층수)	4층이하
		용적률		150% 이하		
		배치·형태		• 조망 및 향을 고려하여 배치		
		색채	주조색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계통 • 원색과 가까운 색 금지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채		
		건축선		3m		

고 시

충청남도 근대문화유산을 통한 지역창조자원화사업에 공주시 유구읍이 선정되어 유구읍의 농촌문화와 전통적인 직물산업에 문화와 예술을 접목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를 통한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고자 계획중인 『유구문화예술마을만들기』사업 기본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2조 등을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07월 01 일

공 주 시



1. 사 업 명 : 유구문화예술마을만들기 사업
2. 사업목적 : 유구 근대문화유산 역사·문화적 가치 재발견, 문화와 축제지역 창조 역량강화
3. 사업내용
 - 가. 위 치 : 충남 공주시 유구읍 일원
 - 나. 사업개요

○ 콘텐츠 개발

- 사진, 영상, 이야기 등 본사업과 관련된 콘텐츠 수집
- 유구섬유산업구조를 보여주는 기반자료, 스토리보드 등 제작
- 유구읍에 남아있는 근현대관련 건축물, 유물, 기억등 발굴

○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 섬유공장거리 중심의 문화거리조성
- 유구섬유역사를 모티브로 한 벽화작업, 포토존설치

○ 작가레지던시 사업을 통한 예술적 콘텐츠 개발

- 전통시장 내 장옥활용, 작가 체류 전시 및 예술활동전개
- 주민이 참여하는 작품제작 및 워크숍진행

○ 문화체험행사진행 : 개발된 콘텐츠 발표 및 홍보 등

4. 사업비 소요액 : 10억원(도비 5, 시비 5)

5. 사업 예정기간 : 2013년 ~ 2014년(2년간)

6. 사업의 효과 : 유구읍의 농촌문화와 전통적인 직물산업에 문화와 예술을 접목하여 다른지역과 차별화를 통한 지역경쟁력 확보

7. 사업시행자 : 공주시장

8. 기 타 사 항 : 관계서류열람 (공주시청 관광과 ☎ 041-840-8093)

고 시

농촌지역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주민역량강화 및 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생활터전의 유지 및 농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의거 시행 중인 소랭이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시행계획(2회)을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2014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승인(수립)하였기에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8조, 제8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일

공 주 시 장

1. 사 업 명 : 소랭이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2. 사업목적 :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등을 통하여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공간을 조성
3. 사업내용
 - 가. 위 치 : 충남 공주시 정안면 대산, 월산, 문천, 내문, 산성리
 - 나. 면 적 : 3,631ha
 - 다. 사 업 비 : 7,000백만원(국비 4,900, 도비 340, 시비 1,760)
 - 라. 사 업 기 간 : 2010년 ~ 2014년(5년간)
4. 사업의 효과 :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사회 유지 도모
5. 기 타 사 항 : 관계서류열람 (공주시청 5도2층과 ☎ 041-840-8693)

6. 금회 승인대상사업 내용

기 능 별	세 부 사 업	사 업 비 (천원)	사 업 내 용	비 고
합 계		2,917,000		
기초생활 기반확충	소 계	843,683		
	마을쉼터 조성	84,852	3개소(대산리 2개소, 월산리 1개소)	
	산책로 및 전망대 조성	713,555	야자매트 L=681.8m, 데크 A=460㎡(176.6m)	
	숲 체험장 조성	45,276	안내판설치, 등산로정비, 휴게공간조성	
농 촌 소득증대	소 계	343,096		
	알밤학습장 조성	343,096	합성데크 A=484㎡, 파고라, 수목식재 등	
농 촌 경관개선	소 계	1,201,776		
	숲 하늘길 경관조성	647,329	숲 하늘길 L=109m, 데크 A=115.8㎡	
	센터주변 경관개선	287,229	조경식재 및 바닥블럭 포장 등	
	상징물 및 안내판설치	267,218	상징조형물, 종합안내판, 시설안내판 등	
지 역 역량강화	소 계	528,445		
	주민역량강화	243,000	교육, 홍보, 컨설팅, 정보화, 마을경영	
	제 경 비	217,543	사업관리, 공사감리, 기타부대비 등	
	예 비 비	67,902		

공주시 공고 제2014 - 885호

「공주시 주민 투표 조례」 등 일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주민 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번호 수집의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1990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시행일에 맞춰 일괄개정하여, 우리시 조례의 미개정으로 인해서 발생될 민원을 미리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 시민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함.

2. 주요내용

공주시 주민투표 조례 등 행정업무상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생년월일로 대체하거나 삭제하도록 하고, 기준에 맞게

관련 조문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을 시행일에 맞춰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공주시 주민 투표 조례 등 10개 조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단체는 2014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주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 사항 등
- 4) 의견 제출할 곳

○ 주소: (우)314-702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공주시 기획담당관실

○ 전화: 041)840-2032, FAX: 041)840-2306

- 5)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
항은 공주시청 기획담당관실 담당자 윤정문(041-840-2032)에게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붙임: 공주시 주민 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주민 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공주시 주민 투표 조례」의 개정) 공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거소 또는 체류지·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거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을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연락처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공주시 포상 조례」의 개정) 공주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중 “2년”을 “1년 6개월”로 한다.

제3조(「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7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4조(「공주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의 개정) 공주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부터 별지 제6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5조(「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과 별지 제4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6조(「공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공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5호 서식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공주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의 개정) 공주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공주시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 절차 및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 절차 및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9조(「공주시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의 개정) 공주시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0조(「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11조(「공주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공주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공주시 주민 투표 조례 별지]

【 별지 제1호 서식 】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공 주 시 장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3.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의 앞자리 숫자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 별지 제2호 서식 】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3.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 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의 앞자리 숫자를 기재 4.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 별지 제3호 서식 】

서명요청권 위임 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 입 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 및 공주시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 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공 주 시 장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의 앞자리 숫자를 기재 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수입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 별지 제4호 서식 】

서명요청권 위임 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 및 공주시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 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의 앞자리 숫자를 기재 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5호 서식】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주민투표의 청구

청구인서명부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공주시 읍·면·동(○책중 ○권)

※ 「주민투표법」 제16조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입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 또는 날인	서명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민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의 앞자리 숫자를 기재
4.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6.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 별지 제6호 서식 】

주 민 투 표 청 구 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공 주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 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 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의 앞자리 숫자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도로 작성			

【 별지 제7호 서식 】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공 주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 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 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의 앞자리 숫자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별지 제1호서식]

- 245 -

제 호

자율방범대 설립 등록증

방 범 대 명 :

대 표 자 :

생 년 월 일 :

(사업자번호)

초 소 위 치 :

등 록 일 자 :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직인)

[제4조 공주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별지]

(별 표)

과태료부과 · 징수기준

위 반 사 항	관 련 법 규	처분규정내용	부 과 기 준			중개업종별 과 태 료
			위 반 회 수			
			1차	2차	3차	
1.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했을 때 이전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제 39조 제2항 제3호	100 만 원 이하의 과태료	4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법인
			30만 원	60만 원	100만 원	공인중개사 및 중개인
2. 휴업 및 폐업신고 위반의 경우	법 제39조 제2항 제8호	"	4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법인
			30만 원	60만 원	100만 원	공인중개사 및 중개인
3. 중개 완성시 거래당사자에게 보증금액 등의 설명과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9조 제2항 제9호	"	4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법인
			30만 원	60만 원	100만 원	공인중개사 및 중개인
4. 중개사무소내 등록증, 중개수수료 요율표, 공인중개사 자격증,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지 않는 경우	법 제39호 제2항 제1호	"	4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법인
			30만 원	60만 원	100만 원	공인중개사 및 중개인

(별지 제1호서식)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 과태료부과처분예고서				
예고 제 호				
과태료처분 대 상 자	사무소명			
	사무소 위치			
	성 명			
	생년월일			
위반사항	위반근거	부동산중개업 제39조	위반사항 발 생 일	
	법위반내용			
과태료금액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45조 및 공주시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제2조 규정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사전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년 월 일까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의견이 없을 때에는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인)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수 신

제 목 과태료 처분 통지

1. 귀하께서 다음과 같이 부동산중개업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나. 위반내용

2.위의 위반 사실에 대하여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전국 금융기관이나 전국·농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공 주 시 장 (인)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납부의무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허가(자격증)번호		상호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위반사항				
과태료금액		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전국금융기관 및 우체국·농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하겠습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인)				

[illegible]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수 신				
제 목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와 관련됩니다. 2.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 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 태 료 처분에대한 이의제기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중개사무소	허가번호		상호	
	소재지			
과 태 료 처 분 내 역	과태료납부 통지 일자		과태료 금 액	
	부과 관청		이의제기일자	
첨 부: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공 주 시 장 (인)				

(별지 제7호서식)

과 태 료 수 납 부

[illegible]

[별지 제2호 서식]

공간정보자료 제공신청서
(제25조제1항 관련)

[별지 제4호 서식]

인수증 (제25조제3항 관련)

1. 인수기관(부서)장

가. 소속(주소):

나. 직급(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2. 인수자

가. 소속(주소):

나. 직급(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다. 생년월일:

라. 인수일자:

3. 사용목적

4. 인수물 내역

가. 자료제공형태

① SHAPE ② DXF(DWG) ③ SDTS ④ 그 밖의()

나. 자료제공 방식

① CD ② USB ③ 도면출력(축척 1:) ④ 그 밖의()

다. 신청지역(지번 및 도엽번호)

5. 그 밖에 사항

공주시장 귀하

[별지 제1호서식]

- 256 -

[별지 제5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 수락통지서

사		건		명			
신		청		일		자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피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신 청 내 용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	수		락		여		부
	수락 불가		사		유		

「공주시공동주택관리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분쟁조정안에 대한 수락여부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 (인)

공주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 258 -

[별지 제1호 서식]

- 259 -

[제9조 공주시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별지]

[별지 제7호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전화번호	
	주 소			
피신고자	성 명		직 위	
	소속위원회 (정당)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부동의				
신 고 내 용				
증빙자료 목 록	※ 증빙자료 첨부			
20 . . . 신 고 자 (서명)				

[제10조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별지]

(별표2)

○ 사무와 관계되는 증인 선언문

선 서

본인은 공주시의회(○○○○위원회) ○○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제11조 공주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별지]

[별표 1]

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

도서관 명칭	소 재 지	비 고
공주시시립도서관 웅진관	공주시 고마나루길 17	
공주시시립도서관 강북관	공주시 월송동현로 51	

[별표 2]

문화센터 사용료

1. 기본시설 사용료

사 용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오전 08:00 ~ 12:00	40,000	오전, 오후, 야간 을 각 1회로 봄
오후 13:00 ~ 17:00	40,000	
야간 18:00 ~ 22:00	40,000	

2. 부대시설·장비 사용료

품 명	사 용 료	비 고
빔 프로젝트	10,000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봄
조 명	20,000	
냉·난방	30,000	

[별표 3]

자료 관외 대출신청서					
대출 자료명	청구기호	저 자	도서명	수량	비 고
대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부터 ()일간				
대출사유					
「공주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6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귀 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관외대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휴대전화번호 : 근무지 주소 : 근무지 전화번호 : 직위(직명) : 공 주 시 장 귀하					

공주시 주민 투표 조례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행	개정안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 <u>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u> ·주소와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 ----- ----- <u>생년월일</u>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및 확인)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주소나 <u>거소 또는 체류지·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u>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및 확인) ① ----- ----- ----- <u>거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u> -----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생략)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u>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u>	② ----- <u>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u> -----

<u>번호</u>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 ----- -----. ----- ----- -----. ③ · ④ (현행과 같음)
--	---

공주시 포상 조례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행	개정안
제10조(공적예비심사) 제9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 2. (생략) 3.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u>2년</u> 미만인 사람 4. (생략)	제10조(공적예비심사) ----- ----- -----. 1. · 2. (현행과 같음) 3. -----<u>1년</u> <u>6개월</u> --- 4. (현행과 같음)

공주시 공고 제2014 - 886호

「공주시 포상 조례 시행 규칙」 등 일부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포상 조례 시행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번호 수집의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1990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현행 규칙을 시행일에 맞춰 일괄개정하여, 우리시 규칙의 미개정으로 인해서 발생될 민원을 미리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 시민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함.

2. 주요내용

공주시 주민투표 조례 등 행정업무상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생년월일로 대체하거나 삭제하도록 하고, 기준에 맞게

관련 조문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을 시행일에 맞춰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공주시 포상 조례 시행 규칙 등 4개 규칙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단체는 2014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주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 사항 등
- 4) 의견 제출할 곳

○ 주소: (우)314-702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공주시 기획담당관실

○ 전화: 041)840-2032, FAX: 041)840-2306

- 5)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
항은 공주시청 기획담당관실 담당자 윤정문(041-840-2032)에게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붙임: 공주시 포상 조례 시행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공주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제1조(「공주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공주시 포상 조례 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공주시 공공인쇄물 광고표시에 따른 광고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공주시 공공인쇄물 광고표시에 따른 광고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3조(「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개정)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 서식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공주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공주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삭제하고, 별제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 서식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공주시의회 포상 규칙」의 개정) 공주시의회 포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공주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별지]

[별지 제2호서식]

공 적 조 서

(1)성 명						(한 자)			
(2)생년월일						(3)군번 (군인의 경우)			
						(4)국적 (외국인의 경우)			
(5)주 소									
(6)직 업						(7)소 속			
(8)직 급			(9)직 위			(10)대외직명			
(11)근무기간						(12)공적분야			
(13)공적요지(50자 내외)									
(14)추천훈격						(15)추천순위			
조 사 자									
(16)소 속						(17)직 위			
(18)직 급						(19)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추 천 관 년 월 일 (인)									

주요 학 력 및 경 력			
(19) 연 월 일	(20) 이 력	(21) 연 월 일	(22)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연 월 일	(24) 내 용	(25) 연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제3조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별지]

[별지 제4호 서식]

위임장 (제8조제3항 관련)

청구인 (위임인)	성 명 (법인명 및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수임인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위임인과의 관계			
공간정보 내용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공간정보 전산실 출입대장 (제9조제4항 관련)

날짜	출입시간		출 입 자				용무	결 재		
	부터	까지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담당자	담당	부서장

[별지 제2호 서식]

대출자료 반납 요청서

수 신 :

통지일자 :

귀하가 대출한 아래 자료는 대출 기한이 경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공주시 시립도서관 웅진관이나 강북관으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번호	도서명	청구번호	등록번호	대출일	반납 예정일	가 격	대 출 자료실
1							
2							
3							
4							
5							
6							

문의처 : 공주시 시립도서관

담당자 :

전 화 :

소재지 :

우편번호 :

공주시 시립도서관장

[별지 제3호 서식]

문화센터 사용허가 신청서				
사 용 자	주 소			
	단체명		전화번호	
	성 명		생년월일	
사용목적 및 내 용				
사용 기간				
사용 시간				
사용 횟수				
연습 시간				
부대시설 사용내역	부대시설명	수 량	부대시설명	수 량
출연 및 참석 예상 인원	출 연	명	참석인원	명
(단, 입장료 및 관람료 징수 시 1인당 금액 : 원)				
「공주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 부 : 행사계획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주시 시립도서관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문화센터 사용 허가서				
사 용 자	주 소			
	단체명		전화번호	
	성 명		생년월일 (단체번호)	
사용목적				
사용허가 기 준	20 . . . ~ 20(일간)			
	시간(~)			
사용료	₩ 원(금 원)			
	※산출기초			
「공주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뒷면 허가조건 참조) 년 월 일 공주시 시립도서관장				

(뒷면 기재사항)

허 가 조 건

1. 아래의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처분,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나. 사용허가의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미납하였을 때
다.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사용료를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는 문화센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사용자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시설 또는 설비 등을 관리의무 태만으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관장이 정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5.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원상복구하고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별지 제5호 서식]

문화센터 사용 변경 신청서		
사 용 자	주 소	
	성 명	
사용목적		
사용신청일	년 월 일	
변경신청 내 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공주시 시립도서관장 귀하		

[제5조 공주시의회 포상 규칙 별지]

[별지 제4호서식]

공 적 조 서

(1)성 명						(한 자 • 원명)					
(2)생년월일						(3)군번 (군인의 경우)					
(4)국적 (외국인의 한함)											
(5)주 소											
(6)직 업						(7)소 속					
(8)직 위		(9)직급•계급					(10)공적기간				
(11)공적요지 (50자 내외)						(12)공적분야코드				-	
(14) 추천훈격						(15) 추천순위					
조 사 자											
(16)소 속						(17)직 위					
(18)직 급						(19)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직인											

주요 학 력 및 경 력			
(19) 연 월 일	(20) 이 력	(21) 연 월 일	(22)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연 월 일	(24) 내 용	(25) 연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제 2조 공주시 공공인쇄물 광고표시에 따른 광고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광고신청 계약등) ①·② (생략) ③ 시장과 광고주간 광고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조례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광고주의 상호(주소), 성명, <u>주민등록번호</u> 2. ~ 5. (생략)	제2조(광고신청 계약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 <u>생년월일</u> 2. ~ 5. (현행과 같음)

공주시 공고 제 2014 - 892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7월 1일

공 주 시 장 인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 장기재직한 직원들에게 그 동안의 공직생활을 되돌아보고 자기성찰과 재충전할 기회 부여
- 나. 휴가(여가)를 통한 삶의 만족도 증가는 개인의 행복지수를 높여 자연스럽게 공직생산성 증가로 이어지는 교두보 역할에 기여
- 다. 직원들의 경조사 휴가일수를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고려 및 현실에 맞게 휴가일수 조정

2. 주요내용

- 가. 경조사 휴가일수표 중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휴가 일수를 2일에서 3일로 개정(안 제23조제1항 별표3)
- 나.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여 20년 이상 30년 미만 10일, 30년 이상 15일의 특별휴가 추가(안 제23조제1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 인사담당관실(서무담당)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 314-702 / 전화 : 041-840-2064 / FAX : 041-840-2307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그 기간 중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허가 할 수 있으며, 각 호의 휴가일수는 2회 분할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을 따른다.

1.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0일
2. 재직기간 30년 이상 : 15일.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3]

경조사 휴가일수표

(제23조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5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u>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u>	<u>3</u>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입 양	본인	2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특별휴가) ① ~ ⑬ (생략) <u><신 설></u>	제23조(특별휴가) ① ~ ⑬ (현행과 같음) <u>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그 기간 중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허가 할 수 있으며, 각 호의 휴가일수는 2회 분할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을 따른다.</u> <u>1. 재직기간 20년이상 30년 미만 : 10일</u> <u>2. 재직기간 30년이상 : 15일.</u>

공주시 공고 제 2014 - 893호

「공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일

공 주 시 장 인

공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채택당직 수당의 현실화로 직원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직비(채택당직)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근무시간 종료 후 3시간 이상 대기근무를 실시하고 채택당직을 하는 경우 20,000원 지급하던 당직비를 30,000원으로 조정(안 제3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 인사담당관실(서무담당)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 314-702 / 전화 : 041-840-2064 / FAX : 041-840-2307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재택당직수당은 20,000원” 을 “재택당직수당은 30,000원”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4. 11. 1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당직수당 지급) ① 당직수당은 1인 1회당 50,000원, 재택당직수당 은 20,000원을 지급한다.	제3조(당직수당 지급) ----- -----, 재택당직 수당은 30,000원을 지급한다.

도시계획시설사업(체육시설 : 계룡산골프장, 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공주시 계룡면 내흥리 산28-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 부지 내 『계룡산골프장 조성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공고 합니다.

2014. 7. 1.

공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계룡면 내흥리 산28-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 도로)
 - 명 칭 : 계룡산골프장 건립공사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구분	부지면적(㎡)	사 업 개 요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골프장,도로)	당초 101,034 변경 100,434 (감 600)	○ 계룡산골프장 조성공사 -골프장 조성 : 6홀 -소로3-15(중복결정) : 144m ⇒ 143m

4. 사업시행자 : (주)계룡산골프장 대표 윤예중

5. 변경인가 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업기간	2012.11.15.~2014.06.30.	2012.11.15.~2014.09.30. (3개월 연장)	
개발면적	101,034㎡	100,434㎡	
건축면적	1동, 280㎡ (연면적:712㎡)	3동, 417.35㎡ (연면적:833.41㎡)	
도로 (소로3-15)	B=4~6m, L=144.0m	B=4~6m, L=143.0m	
주차장	골프장 내부 72대	골프장 구역계 밖으로 주차장 조성 82대	
원형보전녹지	23,989㎡	24,235㎡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공람조서 참조

6. 공람기간 : 2014. 7. 1. ~ 7. 15.(14일간)

7. 공람장소 : 도시재생과 도시계획담당(☎ 041-840-8550)

계룡면사무소(☎ 041-840-8860)

8. 의견제출 : 공람기간 내 도시계획시설사업 변경인가 신청서류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편 입 토 지 조 서

행정구역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 계	15 필지			173,012	102,405	101,034	100,434		
계룡면 내흥리	181-2	잡	잡	7,985	7,741	5,780	5,770	(주)계룡산골프장	
계룡면 내흥리	441	임	임	182	182	182	182	이하진	사정토지
계룡면 내흥리	442	천	천	350	350	350	350	이현곤	소유자사망
계룡면 내흥리	443	전	전	635	635	635	635	(주)계룡산골프장	
계룡면 내흥리	447	전	전	777	777	777	777	(주)계룡산골프장	
계룡면 내흥리	448	전	전	136	136	136	136	(주)계룡산골프장	
계룡면 내흥리	449	전	전	251	251	251	251	(주)계룡산골프장	
계룡면 내흥리	513	전	전	109	104	109	104	이창진	사정토지
계룡면 내흥리	514	전	전	195	195	195	195	(주)계룡산골프장	
계룡면 내흥리	515	전	전	410	410	410	410	이창진	사정토지
계룡면 내흥리	516	전	전	212	212	212	212	(주)계룡산골프장	
계룡면 내흥리	520	전	전	813	813	813	813	(주)계룡산골프장	
계룡면 내흥리	521	전	전	714	686	714	686	(주)계룡산골프장	
계룡면 내흥리	835	도	체	218	218	218	218	(주)계룡산골프장	
계룡면 내흥리	산28-1	임	임	160,025	89,695	90,252	89,695	(주)계룡산골프장	

토지이용계획도(변경)

기
정

변경

